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김 정 호 부연구위원

빈

면

머 리 말

우리 농업의 주된 경영 단위는 '농가'이며,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가계와 생산, 소유와 경영 및 노동이 일치된 '가족 경영'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농가의 양적 감소와 함께 질적으로도 전통적인 농가 개념과 점차 괴리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활·소비와 노동·생산의 단위가 분리되고 있으며, 더욱이 후계자 결여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이 약화되면서 농업 경영의 취약성은 물론 경영 승계의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이들 농가에 대체되는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다양하게 성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현행의 법적·통계적 정의에서는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를 포괄하여 '준농가'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농가 개념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 제도 및 정책에서도 준농가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농가라는 세대 단위의 용어를 확대 해석하거나 남용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이 연구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농가의 개념과 정의에 관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농가의 성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정의 및 분류의 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적출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3년도 정부 위촉과제로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계 분석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여 주신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에 감사드린다.

199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4
3. 보고서의 구성6

제 2 장 농가의 개념 정립과 변천 과정

1. 농가의 개념 정립8
2. 현행 농가 정의의 변화 과정12
3. 외국의 농가 개념과 정의20

제 3 장 농가 구조의 변동과 통계적 성격

1. 농가 호수의 변동과 그 구조31
2. 농가의 성격 변화와 그 구조39
3. 농가 통계의 의의와 한계50

제 4 장 농가의 정의와 분류 체계의 정립 방향

1.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전망57
2.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64
3. 농가 정의와 개념 정립의 방향71
4. 농가의 유형화와 분류의 방향80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보고서의 요약87
2. 결론 및 정책 건의91

부 록

1. 외국의 농가 정의와 관련 통계94
2. 농가 정의에 관한 여론조사표108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농가’ 이전의 용어 변천.....	11
표 2- 2	현행 법률상의 농가 정의	14
표 2- 3	농업센서스에 의한 농가 정의와 분류의 변천 과정.....	19
표 2- 4	미국의 가족농장 동향.....	23
표 2- 5	일본의 전겸업별 농가 수	26
표 2- 6	일본의 경영형태별 농업사업체 수	27

제 3 장

표 3- 1	농가계층 분화의 동향.....	35
표 3- 2	농업센서스에 의한 농가호수(개인농가)의 추이	37
표 3- 3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의 비중, 1990	38
표 3- 4	센서스에 의한 준농가 수의 변화.....	38
표 3- 5	농가의 주요 지표 변화	40
표 3- 6	영농 형태별 농가 수의 추이.....	45
표 3- 7	개인농가의 영농 형태별 경지구모 분포, 1990	46
표 3- 8	전업농가 및 겸업농가의 구성비 추이.....	47
표 3- 9	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가족 구성.....	49
표 3-10	주요 작목별 농가 수와 경영규모, 1990	51
표 3-11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의 실태	54

제 4 장

표 4- 1	기업농에 대한 농가의 의견	62
표 4- 2	농가 정의의 내용에 관한 농민 의견	73
표 4- 3	농가의 필요조건에 대한 농민 의견.....	74

부 록

부표 1	미국의 농장 수 및 농장의 평균규모, 1977~90	96
부표 2	미국의 경작권자별 농장 수 비율, 1959~87	96
부표 3	미국의 매출액 규모별 농장비율 및 농지면적, 1989~90	97
부표 4	미국의 가족농장 비율	97
부표 5	서독의 농가 유형별 호수	102
부표 6	서독의 농가 유형별 경지면적 점유	102
부표 7	서독의 농가 유형별 호당 평균 경지면적	103
부표 8	서독의 경지 규모별 농가 호수	103
부표 9	일본의 농가 동향	105
부표 10	일본의 농가 이외의 농업사업체 구분, 1990	107

그림 목 차

제 3 장

- 그림 3-1 농가 호수 변동의 추이, 1910~9232
- 그림 3-2 경영규모 계층별 임차지율의 추이42
- 그림 3-3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의 추이43
- 그림 3-4 연령별 농업 취업자 수의 추이48

제 4 장

- 그림 4-1 농가 분화의 유형 구분58
- 그림 4-2 농업경영 형태의 발전 과정60
- 그림 4-3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71
- 그림 4-4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개념 체계77
- 그림 4-5 농가 분화과정의 모식화81
- 그림 4-6 농가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8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1. 문제의 제기

새삼 돌이킬 필요도 없이 우리 농업에 있어서 농업경영의 단위로서 널리 인지되고 있는 것이 '농가'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가를 떠올린다. 그만큼 우리 농업은 농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를 생산 주체로 한 경영형태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 농업의 특질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농가는 엄밀히 말해서 '家'라고 하는 집 또는 가구 단위의 가족제도하에서 영위되는 경제 주체이고 또한 농업경영단위이다. 이 농가를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 본 것이 '家族的 農業經營(family farming)'이고, 이를 약하여 '가족농'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가족농의 경영체형태가 농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서는 '가족농=농가'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농가 개념이 제도적으로 지위를 확보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농가를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관한 논의는 농지 개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농지개혁법은 우리 농업에서 自作農主義와 家族主義를 동시에 만족하는 농가를 농업 경영의 단위로 공인한 제도이며, 당시에 성립된 농가 개념이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작농주의와 가족주의라는 두 가지 특성은 각각 포리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주의의 의미는 본래 世帶를 이루는 家系를 생산의 단위로 인식한 것이며, 여기에는 다시 경영과 생활이 미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자작농주의는 소유와 경영과 노동의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된 농업 경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 때문에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에도 농가 규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관련 제도를 정비 혹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농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한다. 농지개혁법을 비롯한 기존의 농가 규정이 그동안의 농업 및 농업 경영의 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현실과 점차 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농가는 농업 경영의 형태론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가족농, 즉 가족노작경영이라는 성격과 점점 괴리되면서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모는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른 경제 주체로서의 적응현상으로 부득이한 경향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지적되는 것은 가족농의 본질적인 요소가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농촌 현장에서조차 “농가라고 해서 모두 농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스스로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농가, 기간 종사자가 없이 고령자나 부녀자의 보조 노동력이 전부인 농가, 농사는 짓지만 자급 식량의 확보에 그치는 정도의 농가 등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건설하게 성장해 온 농가들

중에도 점차 농업경영체로서는 퇴보하는 경향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단위'로서의 농가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가의 성격 변화와 함께 농업 경영의 단위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농가 이외의 경영체이다. 이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을 필두로 하여 '準農家'라는 경영단위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준농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농가 이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농업 경영의 단위라기 보다는 농지 소유의 단위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파악되는 준농가를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으로써 준농가의 개념 또한 농가 성격의 변화 만큼이나 다양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준농가의 성격 변화는 농업 경영체로서의 특질이 강화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파악된 '농가가 아닌 경영 단위'가 아니라 '농가를 구성원으로 한 새로운 경영단위'가 다수 성립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기업 경영의 속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가족 경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家系'로 유지되어 농업 경영을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영농 조직을 형성하는 등 종래의 농가가 아닌 새로운 농업 경영체가 다양하게 성립되는 경향이다.

특히, 농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 조직 혹은 집단 경영은 그 법적 형태의 여하에 불구하고 독립된 농업 경영의 단위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행의 정의는 준농가라는 개념 속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본래 '家'라는 세대 단위로 파악되는 농가 개념과 혼란을 초래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정책에서도 준농가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 통념적인 '농가'라고 하는 세대 단위의 용어를 확대 해석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통계의 오류를 낳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현존하는 농가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개념 정의 및 통계적인 분류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농가의 개념과 정의 및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적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농가의 성격을 농업 경영의 단위로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감안하면서 향후의 바람직한 농가 정의 및 분류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과제의 인식과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인식하에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농가의 정의 및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이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가라는 용어는 과연 현존하는 농업 경영 단위를 파악하는데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이다.

이 과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먼저, 농가 개념의 변천과 관련 통계 및 정책의 변화과정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 통념적인 농가와 통계상의 농가 및 법률상의 농가에 대한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파악되는 농가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통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이용하는 정책에 유용하게 반영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적 개념의 현실적 의미를 진단하여 농가 정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는, 농가 정의에 대한 하위 분류의 문제이다. 물론 분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에서 정의된 농가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한된

농가 정의라면 그 분류 체계는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양한 농업 경영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농업 경영의 단위로서 파악해 온 개인농가 및 준농가의 분류 체계가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준농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업 경영의 측면을 중시하는 분류 방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인농가의 분류 체계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여기서는 농업 경영의 규모에 관한 농가 분류, 농지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분류, 전업과 겸업의 분류, 농업 노동력의 보유 형태에 관한 분류, 농업 경영의 조직에 관한 분류 등을 주요 과제로 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2.2.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현행의 법적·통계적인 농가 정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가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농가 정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념임을 중시하여 현행의 농가 정의가 확립되기 이전에 사용된 유사 용어를 정리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가 정의는 현행의 법률 및 통계에서 확립된 용어이며, 그 기저에는 기존의 농가 개념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농가와 관련된 과거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農地改革史研究」 및 통계청의 「韓國統計發展史」를 주로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가의 정의 및 관련 개념, 그리고 분류 방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한다. 농가 정의와 관련된 법률은 농지개혁법, 농지보전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

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농지 관련 법률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행의 통계자료 중에서 농가에 관한 경제 사회적인 특성을 조사 분류하고 있는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 농가경제조사 등이다. 따라서 이들 관련 법률과 통계에서 사용되는 농가 정의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아울러 농가 정의와 관련된 외국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 농업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찰한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파악된 농가의 성격을 분석하고, 각각의 통계에서 사용된 분류 지표의 변화과정을 검토한다. 즉, 통계에서 파악한 농가가 어떠한 모습이고 그 특질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한다. 아울러 이러한 통계적 측면의 농가 분류가 가지는 정책적인 의미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행의 농가 정의와 관련된 규정간의 상충성 및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현행의 농가 정의 및 분류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가 정의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 내용에 따라서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농가의 개념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제2장, 둘째로는 농가의 성격 변화와 그 통계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제3장, 셋째로는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농가 정의 및 분류 체계의 방향을 검토하는 제4장 등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농가의 개념에 관하여 지금까지 사용된 용어와 그 내용을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부터 戶口 調査가 시작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단위가 파악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후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사용되었던 농가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과 통계적 규정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사용되는 농가 개념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통계에서 파악되고 있는 농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를 검토한다. 특히, 통계적으로 파악된 농가 호수의 변화, 그리고 농가 분류에 의한 농가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농가(가족농, 통계적으로는 個人農家로 칭함) 이외의 농업경영체(통계적으로는 準農家로 칭함)에 관한 동향 등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우리 농업에서 농가 통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농가 정의 및 분류 체계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재의 농업 구조는 향후 수년간 급격히 변모할 전망이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농업경영단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농업 구조의 전망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 농가 정의 및 그 분류 체계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각국의 농가 혹은 가족농장에 관한 개념 정의 및 농장(농가)의 동향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제 2 장

농가의 개념 정립과 변천 과정

1. 농가의 개념 정립

일반적으로 농가의 의미는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이승녕 국어사전)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보면, 농가란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또는 그러한 집”으로 정의하여 글자 그대로 ‘農’을 하는 ‘家’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국어 사전의 정의는 현행의 통계 혹은 법률에서 말하는 농가 정의를 극히 일반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률적으로 농가라는 용어는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에서 비롯되며, 그 후 이러한 개념을 통계에서도 이어 받아 1960년에 농업센서스(당시는 ‘농업국세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현재와 같은 農家 統計의 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農家’라는 용어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지칭하는 농가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에는 농가를 어떻게 파악해 왔느냐 하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 ‘農家’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하여 볼 때, 이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08년에 발간된 韓國中央農會報 제2권 제6호에 의하면 당시 통감부가 공포한 농상공부 훈령 제129호(1908.6.15)에서 ‘농업통계에 관한 건’에서도 단위로 농가 호수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농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훈령에서 처음으로 농업통계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¹⁾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은 이미 그 이전의 명치유신 때에 근대적인 통계방법이 도입되어 1873년부터 실시한 농업통계에서 농업 인구나 그 가구단위인 농가를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²⁾ 결국 현재 통용되고 있는 농가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에 도입된 용어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농가 규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이전에는 어떠한 용어나 개념으로 농가를 파악해 왔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에 대한 자료는 주로 토지제도사적인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에 통용되었던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世帶單位의 農家와는 개념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단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家’보다는 ‘人’ 혹은 개인의 집단으로서 ‘戶’라는 개념이 통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개념하에서 戶口調査에서는 인구나 호수가 파악되었고, 量田事業에서는 토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파악되어 왔다.

여기서 戶는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가족의 구성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

1) 농상공부 훈령의 내용은 漢城府尹 및 觀察使가 별정 양식에 의거 매년도 관할내의 농업통계를 조사 보고하되, 조사 내용은 농가 호수와 농업 인구, 미맥과 대두 등 작물의 실경지면적과 수확량, 우마 수, 양잠 호수 및 상전면적 등의 통계를 매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통계청, 「한국통계발달사 제1권」, p. 115).

2) 加用信文 外, 「農林統計の見方・使い方」, 家の光協會, p. 11.

로서 호적상의 가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家의 개념은 가족보다는 개인이 중시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부장적인 대가족 제도를 유지해 온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대만에서도 家보다는 戶를 사용해 왔다. 대만에서는 현재에도 통계적으로는 농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農戶’가 널리 쓰이며, 이 용어는 중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우리 나라 역시 농가라는 용어보다는 농호라는 용어가 친숙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에서 戶에 대한 기록은 상고때부터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조사가 정례화된 것은 통일신라 후기부터로 알려진다. 당시의 民情文書에 의하면 통일신라 경영덕왕대(742~765)에 3년마다 촌락 단위로 호구, 경작지, 동식물, 가축 등을 조사한 기록이 있다.³⁾

이러한 호구조사와 양전사업의 관행은 조세제도의 기반으로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지며, 특히 고려말부터 量田에서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어떻게 되고 나아가서 이를 어떠한 용어로 칭하였는지는 그 시대의 토지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하고 농가와 관련된 용어만을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⁴⁾

먼저, 고려시대에는 量田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를 칭하는 田主라고 칭하였으며, 경작 농민은 田客 또는 田夫라고 불렀다. 또한 경작자의 호구 단위로서 田戶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여기서 田主는 지주가 아니라 收租者에 불과하고 田客이 자작농민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⁵⁾

3) 통계청, 「한국통계발달사」, p. 43~44.

4) 토지제도의 사적 고찰은 김성호 외의 저서(「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참고할 수 있다.

5) 이에 대해서는 김성호, 전계서, 제1장 제1절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의 양전에 관한 기록은 공양왕 3년(1391)에 科田法이 공포되면서 그 이전의 公私田籍이 소각된 관계로 근거를 찾을 수 없다(통계청, 전계서, p. 62.).

고려시대의 용어는 조선시대에도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어 田客, 田戶, 田人, 田者, 作者, 田主 등으로 지칭되었으나 비교적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田客이었다. 특히, 임란 이후에 실시된 量田事業의 田畵量案(현재의 토지대장)에서 구체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구분하여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소유자를 칭하는 용어로 主(人) 혹은 起主가 있었으며, 이와 대응하여 경작자는 作(人) 혹은 時主라고 하였다. 그 후 조선조 후기에 농촌사회가 분화하면서 지주 계층의 경지 규모를 지칭하는 용어로 中農, 上農, 豪農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조 후기에 들어와서 지역적으로나마 양전 조사가 실시된 자료가 있으나 이 조사가 호구 조사와 연계되지 못한 관계로 경작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양안 자료는 토지 소유 관계와 경작 면적 및 작물 재배상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이전에 농민을 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田客’이고, 농가는 ‘田戶’로 불렸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1 ‘농가’ 이전의 용어 변천

	경지 소유자	경작 농민	경작자의 호구
고려시대	田主	田客, 田夫	田戶
조선시대	主(人) 田主 起主	作(人), 作者 田客, 田人, 田者 時主	田戶
일제시대	地主	耕作者	農家

따라서 農家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며, 일제시대에 사용된 농가의 개념도 같은 기간 동안에 일본의 農會에서 실시했던 農事統計調査의 체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⁶⁾ 다만, 일본에서도 통계적

6) 일본의 농가통계는 1906년부터 農會에 위탁한 農事統計調査에서 비롯되며, 1931년부터는 센서스 방식에 의한 농가 조사가 실시되었다.

으로 파악되는 농가가 통일된 개념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農家 定義’가 현재까지도 농업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

일제시대에 사용된 농가 정의 및 분류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가는 경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의 가구를 칭하며, 실제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제시대의 농가는 지주와 경작자로 다시 구분되는 셈이다.

또한 지주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甲種地主는 소유지 전부를 소작주는 경우, 그리고 乙種地主는 대부분 소작이고 일부분 자경하는 지주를 칭하였다. 특히, 농가 중에서 경종, 양축, 양잠 이외에 산림업, 수산업, 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거나 地主 또는 家主를 겸하고 있는 경우를 겸업농가로 구분하였다.

2. 현행 농가 정의의 변화 과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가에 관한 규정은 토지제도 하에서 만들어졌으며, 일제시대에 농업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農家’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후에도 농가라는 용어가 무리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립과 함께 농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 즉 농가를 어떻게 규정하는나 하는 점이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그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그 하나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농지 소유단위로서의 농가”이며, 다른 하나는 농업통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농업 경영단위로서의 농가”이다.

따라서 그 후 농지개혁법에 기인하는 법률적인 정의와 농업센서스에 기인하는 통계적인 정의는 각각의 목적에 알맞게 수정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까지 농가에 대한 다양한 규정(정

의)이 병존하고 상호 조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계상의 농가를 말하느냐 혹은 법률적인 농가를 말하느냐 등등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1. 법률적 정의

농가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기인한다. 농지개혁법은 제3조에서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家主 또는 동거가족이 農耕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지의 경영자로서의 농가, 즉 ‘토지 기준+세대 기준’의 농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입법 과정에는 농가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농가와 농민, 自耕과 自營, 主業과 兼業, 家戶와 세대주 등등 논란이 많았으나 위와 같은 규정으로 확정되었다.

이 때문에 그 후 수차에 걸쳐 농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용어에 관한 의미를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농지에 관한 한 농지개혁 당시의 농가 정의가 불변의 원칙으로 고수되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만큼 농가의 정의가 농지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⁷⁾

농지제도상의 ‘농가’는 농업경영의 기본 요소인 경지(논,밭,과수원)를 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작자의 가구 단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농가라는 규정하에서 耕者有田이라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농가 규정도 근본적으로는 일제시대의 통계적인 농가 정의에 근거하여, 그 중 지주를 제외한 자경농가에 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농가 규정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성호, 전거서 제4장 제4절을 참고할 수 있다.

표 2-2 현행 법률상의 농가 정의

관련 법률	농가 정의의 내용
농지개혁법	농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
농지보전법	농가: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준농가: 농업을 직접경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후생단체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잡종 0.5상자(2만립 기준)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④ 고등원예작물 또는 특수작물을 330제곱미터 이상, 파수 또는 묘목을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자 ⑤ 신탄 생산자 ⑥ 어업 경영(종사)자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하는 농가란 ‘가족 단위+농업생산 단위’로서 농경이 주업인 ‘家口單位’를 말하고 있다. 또한 주업이란 가주 또는 동거가족중 어느 일원이라도 노력의 반 이상으로써 직접 농경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경을 지도 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합법적 사회단위란 가주와 사실상 동거생활을 영위하는 가구 단위를 말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2항).

따라서 농지개혁법의 정의는 본래 농지 개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농지의 분배를 위한 소유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지 개혁과정에서 분배받은 농지가 농가의 재산(家産)으로 상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농지 개혁사업을 통하여 농지는 농가의 경영주에게 분배되지만 일단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서 후계자에게 상속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 세대에는 경작 농지에 의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경영이었으나 자식 세대에 와서는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영세소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이 다음 장에서 고찰하게 되는 농가의 성격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지제도하의 농가 개념이 현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도 1954년부터 실효성을 확보한 農地賣買證明制度는 농지 소유자의 자격으로 농가의 구성원임을 전제하고 있다. 즉,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농가 가구원이거나 혹은 가족 단위로 6개월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영농하고자 하는 가구원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서 농지매매증명제도에 의하면 농가는 ‘農耕 從事+農村 居住’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⁸⁾

또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가이어야 하는데, 이 농지원부는 1972년에 제정된 농지보전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농지보전법에서는 농가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농지보전법 시행령 제18조)를 말하며, 이를 농가와 준농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농가 이외에 ‘準農家’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농지개혁법에서도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준농가, 즉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후생단체 등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였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준농가로 칭하지는 않았다. 이 역시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본의 농가통제에서 사용한 ‘준농가’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농지제도상의 농가만이 법률적인 의미의 ‘농가’로 규정됨에 따라서 농정책에 의한 농가 육성에 혼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농지(논, 밭, 과수원)를 직접 경작하는 경종 농가 이외의 축산 농가도 ‘농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1990년의 농어

8) 농지매매증명제도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농지매매증명 발급 요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시에 참여화되었다. 그 결과 동법에서는 농가를 새롭게 규정하기 보다는 ‘農漁民’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한마디로 복잡한 농가 정의를 다시 논쟁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 셈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농어민’이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규정은 농업센서스에서 말하는 농가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농어민의 가구 단위가 곧 농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은 ①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④ 고등원예작물 또는 특수작물을 330제곱미터 이상, 과수 또는 묘목을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자 등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농업 이외의 ⑤ 신탄 생산자, ⑥ 어업 경영(종사)자를 규정하여 포괄적인 농어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개인이 아닌 法人의 구성원도 농어민에 포함하도록 하여 동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원용하면 농가는 농지제도상의 농가와 그밖의 ‘個人農家’, 그리고 개인농가에 준하는 영농조합법인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967년의 농업기본법 이후부터 점차 증가를 보인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협업경영 혹은 기업농)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법률적인 농가 정의는 농지 개혁 당시에 만들어진 농가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에 농가, 즉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농민을 농지 소유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법 논리에 맞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 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농지 개혁을 실시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도 ‘농가’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통계 용어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의 농지법에서는 농가가 아닌 ‘農地 所有者’와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2. 통계적 정의

일제시대에 시작된 농가 통계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당시 농림부는 정부 수립과 동시에 각종 농업시책을 전개하면서 농업 생산에 관한 행정 통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농가 호수와 인구 및 양곡작물, 축산물 등을 농림기본통계로 발표하였다.⁹⁾

이 기본통계는 농업 경영의 기본 요소인 농경지 이용 및 농가와 농가 인구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조사 대상인 농가를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으나, 1961년부터는 농업센서스의 농가 정의에 따르고 있다.

농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농가경제조사이다. 농가경제조사는 6.25 이후의 농촌경제 실태와 농가의 소비 수준을 측정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경과를 보면 1953년 7월에 농림부와 한국은행 조사부가 합동으로 농촌실태 조사를 1년간 실시하였고, 그 이듬해부터는 농림부가 독자적으로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 생산비 조사 등을 표본조사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 그 후 1962년 12월부터 한은 및 농협 등과 협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부터는 농업센서스 조사결과에 의한 개인 농가만을 표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경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가란 “농업센서스의 개인농가”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통계적인 농가의 정의는 농업총조사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3)이다.

농업총조사(약칭하여 ‘농업센서스’라고 함)는 본래 농업을 경영하는 사

9) 1950년대의 통계를 집약한 「대한민국통계연감」(공보처 통계국, 1954) 창간호에 농가 호수와 인구 및 경지면적이 수록되어 있다.

업체의 전반적인 농업 상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1930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는 1950년에 세계농업총조사(약칭 ‘농업센서스’)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반 준비를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6·25동란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1960년에 처음으로 ‘농업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조사 대상이었던 농가는 농지제도에서 말하는 농가의 개념으로 “경지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를 지칭하였다. 또한 이를 농업사업체로 칭하고, 그 법적 형태를 농가와 준농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농가 개념은 1970년의 농업총조사에서 대폭 보완되었다. 70년 조사에서는 조사일 기준으로 ① 경지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고등원에 특용작물 각각 3a 이상, 과수 묘목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소, 젖소, 고기소를 각각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돼지, 면양, 산양을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⑤ 토끼 40마리 이상, 가금 3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⑥ 꿀벌 5통 이상 치는 가구, ⑦ 누에씨 12g 이상 소잡하는 가구, ⑧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 되는 가구, ⑨ 가구원중 연간 농업노동 일수 90일 이상 동일인이 계속 30일 이상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한 가구 등에 해당하면 농가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를 개인농가와 준농가로 구분하였다.

1980년의 농업조사에서는 1970년 조사때에 정의된 농가 중에서 “복합경영한 농업수입 1만원 이상되는 가구”를 “복합경영한 연간 농업수입이 규정한 각 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로 고치고,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한 가구”를 삭제하였다. 또한 여기서도 개인농가 및 준농가로 구분하였다.

최근에 실시한 1990년도 농업총조사에서는 1980년의 농가 규정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다. 여기서 농가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며, 이 농가는 다시 개인농가 및 준농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농가 통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個人農家は 다음의 4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것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농가를 말한다. 즉,

표 2-3 농업센서스에 의한 농가 정의와 분류의 변천 과정

	농가(개인농가)의 정의	주요 분류내용 및 특기사항
1960년 농업국세 조사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경지(전, 답, 과수원) 300평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	○ 경지규모별(규모계층의 10단계 분류) ○ 영농형태별(미작 등 6부문 분류) ○ 농지의 단지수별(단지수의 10단계 분류) ○ 농지보유형태별(소유형태의 4단계 분류) ○ 경영주 연령별(연령의 6단계 분류) ○ 전겸업별(전업 및 겸업의 2단계 분류)
1970년 농업 센서스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가구 ① 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 ②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 ③ 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 ④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이상 사육 ⑤ 소가축(토끼) 40마리 이상 사육, 가금(닭, 오리) 30마리 이상 사육 ⑥ 꿀벌 5군 이상 사육 ⑦ 누에씨 12g(1상자) 이상 사육 ⑧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 ⑨ 가구원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 경지규모별(규모계층의 11단계 분류) ○ 전겸업별(경영주 겸업, 가구원 겸업 구분) ○ 영농형태별(임금노동, 판매농가 구분) ○ 가구원수별(가구원수 15단계 분류) ○ 경영주 연령별(경영주 연령 12단계 분류) ○ 농산물 판매액별(총액규모 및 9개부문별) ○ 경영주 학력별(미취학 및 졸업 구분) ○ 농업종사 인원별(총종사자 및 주종사자별) ○ 경지차용 비율별(차용비율 10단계 분류)
1980년 농업조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 ①~⑦ 1970년 농업센서스와 동일 ⑧ 연간 총수입중 농업수입이 위의 각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 경지규모별(규모계층의 16단계 분류) ○ 전겸업별(경영주 겸업, 가구원 겸업 구분) ○ 가구원수별(가구원수 10단계 분류) ○ 농업종사인원수별(종사자수 4단계 분류) ○ 경영주 연령별, 학력별(연령 9단계, 학력) ○ 논, 밭의 비율별(보유농지에 대한 비율) ○ 영농후계자 연령별, 학력별, 종사분야별 ○ 문화용품 보유별(문화용품 15종)
1990년 농업 총조사	① 경지 10a(약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시설작물 3a(약100평),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약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소) 1마리,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소가축(토끼),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경지규모별(규모계층 11단계 분류) ○ 영농형태별(논벼 등 9개 부문 분류) ○ 전겸업별(경영주 겸업, 가구원 겸업 구분) ○ 가구원수별(가구원수 10단계 분류) ○ 경영주 연령별, 학력별 ○ 영농승계자 연령별, 거주지별 ○ 농업종사 인원별 ○ 경지면적의 논, 밭 비율별 ○ 차용지 비율별 ○ 벼농사의 형태별(자가, 위탁 구분) ○ 문화용품 보유 및 난방형태별

- ① 경지(논, 밭, 과수원)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② 시설작물 3a 이상, 과수나 묘목은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 ③ 대가축 1마리, 중소가축 3마리, 소가축 및 가금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등의 요건을 갖춘 가구 단위이다.

또한 準農家란 “개인농가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 단체(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기타)”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농업센서스에서 조사되는 농가는 개인농가를 의미하였으나 1990년부터는 준농가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지만,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개인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현행의 농가 통계에서는 농업사업체, 즉 ‘농업경영자+농업종사자’의 가구 단위를 독립적인 농업 경영의 단위로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가구 단위이며, 농업 경영 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구미 각국에서는 농업 경영의 기본 단위로서 토지 기준(흔히 ‘농장’; farm or holdings)이 통용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이러한 ‘農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가구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農業(農舍)와 家計(住宅)가 미분화된 특질을 고려하여 경작자의 ‘家’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3. 외국의 농가 개념과 정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업경영 단위는 ‘농가’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를 경영 형태론적으로는 ‘가족농’이라고 하는 개념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족농의 외형이 농가

로서 파악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가족농의 본래 의미는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미 언급하였듯이 가계와 경영이 혼합된 경제 주체로서의 농가와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가족농은 각국마다 역사적으로 농업의 가장 이상적인 경영 형태로 간주해 왔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농장제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소농 국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자유·독립·민주)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가족농이란 용어는 ‘family farming’을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며, 본래 이 용어는 헨리 테일러(H. Taylor)의 저서(Agricultural Economics, 1919)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용어는 자본제적 경영 혹은 기업가적 경영에 대응되는 의미로서 家族經營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 사용되는 ‘family farm’이란 용어는 家族農場을 칭하고 있으며, 농장제 농업의 가족농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¹⁰⁾

3.1. 미국의 가족농장

미국의 가족농은 제퍼슨(T. Jefferson)의 가족경영에 대한 이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는 가족농의 조건으로 다음의 3가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家族主義로서 자급의 미덕과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한다. 둘째는, 經營的 感覺으로서 농업 경영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스스로의 의사 결정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셋째는, 政治力으로서 토지 소유로 투표권 및 시민의 지위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퍼슨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농민은 어디까지나 자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미국 시민으로서 안정적인 사회 계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가 가능한 한 세습의 형태로 다음 세대의 농민에게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제퍼슨이 제창한 가족농은 농업경영의 측면보다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10) 이에 관한 자료는 김정호외,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를 참고할 수 있다.

농민에 대한 자질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농의 이상은 19세기 말부터 급격히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농산물 시장의 발달로 자급보다는 상업적인 농업이 팽배하고 고용 노동력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임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수정이 농업정책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게 되는 것은 뉴우덜 이래의 정부가 농업에 깊이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가족경영의 개념 설정과 수정은 현실에 부응하는 것이면서도 미국 농업에 대한 이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가족농은 이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였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가족농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1944년초에 農務省은 家族經營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가족경영에서 경영자는 농장의 경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도 그 경영에 조력하며, 외부로부터 적당한 사람 수 이상은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경영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생활을 창조하여 농장을 유지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정의에서는 실제의 농업경영에서 자본 투하와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를 요하는 경우로서 가족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경영이나 겸업농가는 가족경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당시 농무성은 농장 수의 56%가 이에 해당한다고 추계하였으며, 1950년 중반까지 70%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정의도 1950년대에 들어 크게 수정되었다. 가족경영은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겸업농가 및 부채지주의 농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수정된 규정에서는 가족경영에 혼합된 이상이 제거되고, 경제적 자립성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을 갖춘 경영뿐만 아니라 영세 규모의 경영 및 겸업농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용 노동력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5인 이상의 家族 勞動力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족경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 정

표 2-4 미국의 가족농장 동향

단위: 천개소, %

년 도	총농장 수	가족농장 수	가족농장 비율
1977	2,455	2,172	88.4
1980	2,439	1,631	66.9
1983	2,378	1,558	65.5
1985	2,292	1,562	68.1
1987	2,212	1,428	64.5
1988	2,197	1,351	61.5

주: 농장수는 6월1일 기준으로 연간 1,000달러 이상의 농산물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경영체.

자료: U.S.D.A., Agricultural statistics, 1990.

의에 의해 95%의 농장이 가족경영의 범주에 속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농장이나 법인조직 농장도 가족경영으로 불리게 되었다.

1977년에 의회는 정부가 지나치게 광의로 가족경영을 정의한다고 하여 가족경영과 소농을 구별하여 각각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의 정의가 지나치게 정책 편의적이고, 1.5인 이상의 가족노동력 보유라는 가족경영의 조건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회의 요구는 적어도 가족 노동력이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광범한 농민 계층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족경영의 정의를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족경영의 실체는 변해도 가족경영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농업에서 가족농장 인식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되고 있다.

첫째, 가족농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근간으로 불리는 독립 자영의 농민층이다. 따라서 가족 농장의 경영주는 농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일부분의 차지는 인정되지만 전부 차지하고 있는 순임차 농장은 가족경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가족농장은 土地所有者·經營者·賃勞勤者의 3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가족경영은 가족 노동력에 의해 농장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는 고용 노동력이 보충되어도 좋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 노동력은 총가족노동력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2. 영국의 가족경영농장

영국의 가족농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의 농업구조 변천사와 일치한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유수의 가족농주의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시작된 농업구조의 변화는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농업 생산성의 성장과 팽창하는 도시 산업부문으로의 노동력 유출은 영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地主·借地人·勞働者를 기초로 하여 출현한 농업의 3층 구조는 당시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산업화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뒤따라야 할 모델로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영국 농업에서 가족경영 농장의 역할은 거의 간과되었다. 당시 학자들은 가족경영의 내부 관계보다는 농업 노동자 또는 지주·차지인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가 농업이 불황에 빠지기 시작한 19세기 말엽에 와서야 비로소 자본주의적 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족경영이나 농민 소유제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다.

비록 19세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대농장 경영의 자본제 농업이 지배적이었지만 농업 구조는 다양하고 분산적이었다. 소규모 가족노작 농장은 19세기 중엽까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장가족 구성원에 대한 고용인의 비율이 오늘날보다 높았지만, 이들 고용인의 다수는 동거하인(living-in servasts)이나 농장가계의 구성원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농장에서도 최소한 1명이나 2~3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가족농의 실체였다.

1870년대 말엽 옥수수 농업의 호황으로 인해 가족과 가족노동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Winter(1986)는 농촌 인구의 3대 그룹이 '새로운 전문 가족 생산자(new specialised

household producers)’ 형태로 수렴되었다고 규정했다.

이 시대의 전문경영 농장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원되는 과중한 육체 노동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여성들은 특히 달걀이나 낙농품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해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자본가적 농장들은 노동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경종에서 가축 생산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고용노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용 노동력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세기 중엽 인구총조사 기록에 의하면 거의 농민 1인당 또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가족 구성원 1인당 3명의 고용노동이 있었다고 한다. 1931년 그 비율은 여전히 2.5:1 이었는데, 최근에는 1:1 이하의 수준이다.

가족 경영에서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自營農(owner occupation)의 성장이다. 1908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약 1할 수준이었으나 1927년까지 그 규모는 3할을 상회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7할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Northfield Committee의 추정).

오늘날 영국에서는 일상 용어에서나 학술 용어에서나 家族農(family farm) 보다는 小農(small farm)이란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족농은 家族經營農場(farm as a family business)의 의미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전제된다.

첫째는, 家族主義로서 경영주는 혈족이거나 혹은 결혼에 의한 가족이어야 한다. 둘째는, 농장의 경영권은 대체로 소유권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世襲主義이다. 즉, 농장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권은 동일 가족내에서 다음 세대로 이양된다.

이러한 가족 농장은 영세 농장, 소규모 농장, 중규모 농장, 대규모 농장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족 경영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장이나 중규모 농장을 지칭한다. 여기서 소규모 농장은 일반적으로 겨우 가족노동력이 재생산 가능한 농장을 말하며, 중규모 농장은 가족 노동력을 연간 완전연소시키고 가족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농장으로서 小農 개념에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대규모 농장은 상층농으로 발전

하면서 자본가적 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농장이다.

따라서 가족 경영이란 엄밀한 의미로 家族勞作經營(family-worked farm)에 한정하여 소규모·중규모 농장을 지칭하고 있다. 이 가족노작경영은 2인 이상의 가족 노동력을 보유하는 농장을 말한다.

3.3. 일본의 농가

일본의 ‘農家’는 학술적이나 통계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가 통계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는 ‘농가’가 아닌 ‘농업 사업체’이다. 즉,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또는 세대 이외의 사업체”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며, 1950년 농업센서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농장’이라는 구미의 개념에 대응하는 사업장 혹은 농장의 의미이다. 따라서 農家は “세대인 농업사업체”만을 말하는 셈이다.

1990년도 농업센서스에서 말하는 농업사업체란 “경영경지 면적이 10a 이상 혹은 경영 면적이 규정에 달하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농산물 판매액이 15만엔 이상(예외규정농가)”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5 일본의 전겸업별 농가 수

년도	총 농가수	1) 자급적 농가	2) 판 매 농 가				
			계	전업농가	겸 업 농 가		
					계	제1종겸업	제2종겸업
1960	6,056	—	—	2,078	3,978	2,036	1,942
1970	5,342	—	—	831	4,511	1,802	2,709
1980	4,661	—	—	623	4,038	1,002	3,036
1992	3,742	854	2,888	451	2,437	446	1,991

1) 자급적농가는 경지면적 30a 미만이고 농산물판매액 50만엔 미만의 농가.

2)는 자급적 농가 이외의 판매농가.

표 2-6 일본의 경영형태별 농업사업체 수

년 도 경영 목적	총 사업체 수	협업 경영체	주식 회사	유한 회사	기타 회사	농협및 농업 단체	국, 지방 공공 단체	학 교	기 타
1975	12,521	4,164	1,237	-	1,443	1,531	1,101	731	2,314
1980	12,601	3,738	1,244	-	1,758	1,684	1,188	670	2,319
1985	12,227	3,655	1,196	1,642	127	1,498	1,227	808	2,074
1990	11,620	3,581	1,175	1,829	86	1,287	1,145	705	1,812
판매목적	7,473	3,581	1,051	1,776	74	662	73	6	250
목장경영	1,464	-	11	32	3	389	326	-	703
기 타	2,683	-	113	21	9	236	746	669	859

- 주: 1) 협업경영은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2호 이상 세대의 공동경영체.
 2) 주식회사는 상법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갖는 경영체.
 3)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법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갖는 경영체.
 4) 기타 회사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에 상법에 근거한 경영체.
 5) 농업단체는 기타 법인격체.
 6) 공공단체는 시험장, 공공육성목장, 번식센터 등.
 7) 학교는 시험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경영하는 농장.
 8) 기타는 농사조합, 종교단체(사원), 청년단 등의 공동경영체.

자료: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농림수산통계, 1993.

아울러 '農家 以外の 事業體'를 별도로 규정하여 협업경영체,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타 회사, 농협, 기타 농업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사업체를 말하고 있다. 이들 농가 이외의 사업체가 1950년 이전에는 '준농가'로 호칭되었다.

일본은 1868년 토지소유를 공인한 이후부터 개인 단위인 농가가 농업의 생산주체로 확립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인한 농지 개혁으로 가족노작적 자작농 체제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가족농은 곧 농가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경영에 대한 철학은 대단하여 독립 자영하는 농업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자립경영을 육성하기로 하고, 그 조건의 하나로서 근대적 가족관계의 확립을 들었다. 즉, 자립경영은 소득, 기술,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자주독립 가능

한 개별경영이라는 목표와 그 달성을 부르짖는 것이었고, 새로운 근대적 가족경영을 정책적으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농가' 중심의 농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쟁이 제기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이 각각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 하나는 가족농 보호의 주장이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의 밖에 농업을 위치지워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자급의 논리를 토대로 하는 동시에 노작경영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것이 현재의 농업을 황폐로부터 탈출시키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農業經營體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생산조직이나 법인화, 인테그레이션 등의 조직화를 중시하여야 하며, 이들을 개별 농가와는 별개의 새로운 경영주체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특히, 가족경영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가족경영도 이미 농업경영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다른 경영 형태의 탄생과 그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경영이 일본 농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업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미 1965년부터 농사조합법인과 같은 법인경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농업사업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3.4. 외국의 농가(농장) 동향에 의한 시사점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가족농은 농업의 발전과 함께 역사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속에서 각국마다 가족농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가족농주의를 채택하는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강조되는 점은 첫째, 封建地主制의 폐해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후에 많은 국가에서 토지 개혁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둘째는, 농업 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족경영이 다른 경영 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이다. 家族農의 強點 때문에 농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참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셋째는, 가족경영을 지지하고 있는 社會的 規範이다. 이 점은 가족농의 역사성에도 기인하지만, 특히 사회적인 소득 분배측면에서 농업이라는 소득원이 가족농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가족노동 보수의 향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家族農의 理想'이라는 인식이 점차 쇠퇴하면서 각국마다 가족농 중심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족농의 성격 변화는 바야흐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노동력이 쇠퇴하는 반면에 고용노동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농장에 토지 및 농업생산이 집중되고, 자작농의 감소와 함께 대규모 농가도 차지에 의한 규모 확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영세농·소규모 농가는 농외수입 비중을 높이면서 겸업농가로 전환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가족농의 이상이었던 소농경영의 상당수가 몰락 내지는 농기업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가족농을 보완하는 營農協力組織이 대두되어 미국에서는 농업경영관리회사(management service) 및 영농 서비스회사가 농장경영을 대행하기까지 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서독에서는 농기계 이용조직(Maschinenringe), 일본에서는 請負耕作이나 영농집단 등과 같은 형태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종래의 가족농을 구성원으로 하는 協業農場의 증가도 자본제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기브츠 및 모샤브를 모방한 농장이 각국에 산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로서 프랑스의 共同經營集團(G.A.E.C.), 대만의 협동농장(농업발전조례 규정),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등이 좋은 사례이다.

이렇게 볼 때 가족경영은 내부적인 변질이 문제로 지적되기는 하면서도 각국마다 가족농에 대한 동경과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

은 단지 농업자 자신만의 동경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통된 인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농업은 대규모 법인조직 중심으로서, 이것은 그들이 이상으로 삼아왔던 가족경영으로부터 괴리되면서 가족경영이라고 칭하기 곤란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가족경영의 정의를 몇 차례 수정하면서 가능한 한 다수의 농업경영을 가족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왜 이처럼 무리하게 정의를 수정하면서 가족경영의 명칭으로 대다수의 농가를 포함하려고 하는가. 가족경영의 실체로부터 분리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가족경영을 농정의 근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각국마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가족농의 논리 및 철학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상황이며, 다만 최근의 농업 국제화 추세 속에서 자국 농업의 주된 생산 주체인 가족농을 상당 기간에 걸쳐 유지시켜야 하는 과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농가 구조의 변동과 통계적 성격

1. 농가 호수의 변동과 그 구조

1.1. 농가 호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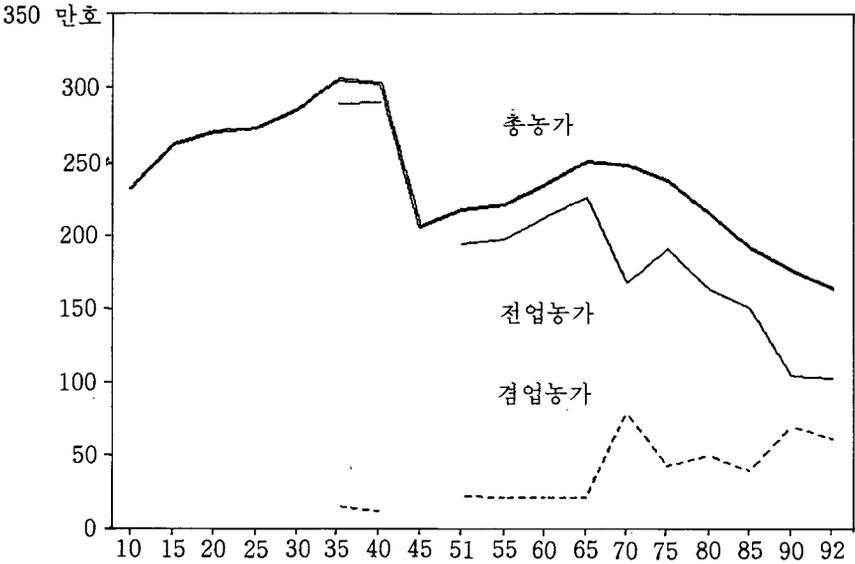
먼저 (그림 3-1)에서 우리 나라의 농가 통계가 시작된 이래의 農家戶數變動을 5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여기에 표시된 농가 호수는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농가를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일제시대에 도입된 농가 통계는 1909년부터 조사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지주와 경작자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913년부터이다.¹⁾ 당시에 조사된 1909년의 총농가수는 2,212,878호로서, 그 중 한국인은 2,211,137호이고 외국인이 2,012호였다. 또한 1913년에 지주와 경작자로 구분하여 조사한 총 농가수 2,573,044호 중에서 지주는 80,608호(3.1%), 자작농가

1) 일제시대의 농가통계는 1909년부터 1943년까지의 기록을 조선총독부, 「농업통계표」에서 얻을 수 있다.

는 586,471호(22.8%), 자작겸 소작농가는 833,771호(32.4%), 소작농가는 1,072,194호(41.7%) 등이었다.

그림 3-1 농가 호수 변동의 추이, 1910~92



주: 1966년까지는 총농가 수 중에서 한국인만을 추출한 수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사관계자료집 제5권」, 1988. 및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에서 작성.

이렇게 파악되기 시작한 농가 통계는 1935년의 3,055,433호(한국인)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로 반전되어 1943년의 2,779,164호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그리고 해방을 전후하여 통계치의 연관성은 미흡하지만, 「朝鮮經濟年報」(조선은행조사부)에 의하면 도별통계로 집계된 1945년의 농가 호수는 2,165,477호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 통계 체제가 확립되면서 농림업센서스의 정의에 따른 농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의 농가 호수는 2,183,299호로 조사되었고, 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60년에는 2,349,016호, 그리고

1967년에는 2,586,864호로 최고에 달하였다. 다시 감소로 반전된 농가 호수는 1970년에 2,483,318호, 1980년에 2,155,073호, 1990년에 1,767,033호, 그리고 1992년 현재로는 1,640,853호로 조사되어 있다.

이러한 농가 호수 증감의 추세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기는 1910~35년까지로 농가 호수가 점증했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농가 수는 71만호가 증가하여 연평균으로는 매년 2.6만호씩 늘어났다.

제2기는 1936~51년까지로 농가 호수가 격감했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농가 수는 87만호가 감소하여 연평균으로 매년 6.2만호씩 이농한 셈이 된다.

제3기는 1951~67년까지의 점증했던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40만호의 농가가 증가하여 연평균으로 2.5만호의 증가를 보였다.

제4기는 1967년 이후 현재까지로 다시 점감하는 시기이다. 1992년까지 25년 동안에 95만호의 농가가 이농하여 연평균 3.8만호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1.2. 농가 호수 변동의 구조

1.2.1. 사회·경제적 요인

앞에서 파악한 농가 호수의 변동은 한 마디로 경제 변동의 실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조사 방식의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농가 통계가 작성된 1909부터 1935년까지의 농가 수 증가는 일제의 植民 政策의 결과에서 비롯된다. 당시에는 일본 본토로부터의 식민도 증가하였지만, 제주·소작관계에서 파생된 다수의 영세농가가 불가피하게 식량 증산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증가하던 농가 수는 1935년부터 감소로 반전되었는데, 이것은 전시 경제체제에 의한 노동력 동원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즉, 농업의

로의 광범위한 노동력 이탈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후 해방을 맞으면서 해외로부터의 복원 귀국자의 농촌 정착이 가중되어 농가 호수는 미증유의 증가를 보였다.

1951~67년의 증가는 농지 개혁에 따른 창설농가 및 잠재 실업자의 농촌 환류의 효과로 보여진다. 특히, 6·25동란 이후의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추진된 개간 및 간척사업은 다수의 농가를 창설한 것으로 사료된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도시 경제의 회복에 따라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환류하는 시기였으며, 또한 나아가서 경제 성장과 함께 공업부문으로 농업 노동력이 다량 유출되기 시작하는 소위 ‘工業部門의 吸引力 (pulling in)’이 강한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농업교역 조건이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가속되어, 말하자면 ‘農業部門의 排出力 (pushing out)’에 의해서 농가 호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총농가 수의 변동은 농가의 계층 구조 변화, 즉 농가 분화의 동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영세농이 농업에 참여하느냐(농가 창설) 혹은 이탈하느냐(이농·탈농)에 따라서 총농가 수의 변동이 좌우되는 것이다.

(표 3-1)은 이러한 농가 계층 분화의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인 경향은 보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농지 개혁에 의하여 소규모 자작농이 대량 창출됨에 따라서 1967년까지는 1.0ha 미만층과 3ha 이상층의 농가 수가 중간 계층의 농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한 兩極 分化의 시기였다. 그 후 1967년부터 1983년까지는 총농가 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0.5~1.5ha 계층이 비대한 中農標準化의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1983년 이후는 대체로 1.5ha를 분기점으로 하여 상층농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3ha 이상의 계층이 실수로도 증가를 보이는 兩極 分化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3-1 농가계층 분화의 동향

단위: 천호(%)

구분	년도	경종농가	0.5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ha 이상
호수·구성비	1951	2,184 (100.0)	933 (42.7)	782 (35.8)	246 (11.3)	127 (5.8)	93 (4.3)	3 (0.1)
	67	2,587 (100.0)	919 (35.5)	829 (32.0)	446 (17.2)	291 (8.5)	135 (5.2)	39 (1.5)
	83	1,948 (100.0)	571 (29.3)	719 (36.9)	392 (20.1)	160 (8.2)	84 (4.3)	23 (1.2)
	92	1,618 (100.0)	469 (29.0)	496 (30.2)	308 (18.8)	169 (10.3)	124 (7.5)	53 (3.2)
년평균증감률	51/ 67	25.2 (1.1)	△0.9 (△0.1)	2.9 (0.4)	12.5 (3.8)	5.8 (3.5)	2.6 (2.4)	2.3 (17.4)
	67/ 83	△39.9 (△1.8)	△21.8 (△2.9)	△6.9 (△0.9)	△3.4 (△0.8)	△3.7 (△1.9)	△3.2 (2.9)	△1.0 (△3.1)
	83/ 92	△34.6 (△2.1)	△15.5 (△2.9)	△21.3 (△5.5)	△3.9 (△1.0)	1.4 (0.8)	2.9 (3.2)	1.2 (3.3)

자료: 농림수산기본통계.

1.2.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의 변화

농가 호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이유중의 하나는 조사 대상, 즉 농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여 조사하는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이에 따른 농가 수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가의 정의 여하에 따라서 파악되는 농가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농가 정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에는 경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포괄하여 농가 통계를 작성하면서 경종, 목축, 가금, 양잠 등을 농업으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적으로는 10만호를 넘지는 않지만, 경지의 소유자를 농가로 규정함으로써 그 후의 농가 정의와 연계되지 않으며, 따라서 농가가 과다 조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에는 생업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가구를 농가로 정의하여 농업경영·판매농가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조사 방법으로 토지대장을 기초로 필지별 소유자와 경작자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경중농가에 치우친 조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방 이후 농업센서스를 도입하는 등 통계의 체계가 확립되면서 1960년대에는 경지에 대하여 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의 경작자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경작하지 않는 농가, 즉 無耕地 農家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에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서 농업노동력 단위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에 의하면 세대원의 누구를 막론하고 주업·부업 여하에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포괄함으로써 과다 조사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는 FAO의 권고에 의하여 가능한 한 많은 농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농업 수입이 있는 가구”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업수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서 농가가 판단되며, 따라서 농업 수입이 잘 들어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과소 조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 조사 방법에 따른 조사원의 主觀的 判斷이 개재되는 우려이다. 특히, 농촌 사회에서 일반적인 통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농가와 조사원이 통계상으로 파악하는 농가의 괴리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재촌지주, 농작업의 완전위탁, 농업노동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주어지고 조사요령이 세밀하게 작성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 조사원의 선입관이 작용할 우려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2)와 (표 3-3)은 위와 같은 농가 정의에 따라서 총농가 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농가의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2 농업센서스에 의한 농가 호수(개인농가)의 추이

단위: 호

구 분	총농가호수	임금노동자	무경지농가	10a미만농가	10a이상농가
1960년	2,329,128	—	—	—	2,329,128
1970년	2,483,310	65,950	19,990	12,843	2,384,535
1980년	2,155,073	—	27,877	14,187	2,113,009
1990년	1,767,033	—	23,803	14,796	1,728,434

자료: 농업센서스, 각년도.

먼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노동자, 무경지농가, 그리고 경지면적 하한규정 이하의 농가수를 보면 1960년에는 총농가 수 2,329천호가 그대로 10a 이상의 농가 수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에는 총농가 수 2,483천호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66천호, 무경지 농가가 20천호, 그리고 경지면적 10a 미만의 농가가 13천호이며, 경지면적 10a 이상의 농가는 총농가의 96%인 2,384천호로 파악되었다.

또한 1980년부터는 임금노동자가 배제되었다. 그 결과 경지면적 10a 이상의 농가는 1980년에 총농가 수 2,155천호 중에서 2,113천호(98.1%)이고, 1990년에는 총농가 수 1,767천호에 대하여 1,728천호(97.8%)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농가 통계상에서 파악되는 영세농가는 '농가로서의 下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3-3)은 1990년 센서스결과에서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가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무경지 농가를 포함한 경지면적 0.1ha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지만, 이를 포함한 0.5ha 미만 농가의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다. 즉,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가 총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6%이며, 그 중 전업농가가 23.5%, 그리고 겸업농가가 36.1%를 차지한다. 또한 농가 인구로는 25.7%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서 경지면적으로는 8.1%이고, 그 중에서

표 3-3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의 비중, 1990

항 목	전 체	0.1ha 미만 계층		0.1~0.5ha 계층	
		실 수	%	실 수	%
농 가 호 수 (호)	1,767,033	38,599	2.2	467,907	26.5
- 전업농가(호)	1,052,315	22,078	2.1	225,588	21.4
- 겸업농가(호)	714,718	16,521	2.3	242,319	33.9
경 지 면 적 (ha)	1,823,380	1,183	0.06	146,176	8.0
- 논 면 적 (ha)	1,206,387	202	0.02	88,689	7.4
- 밭 면 적 (ha)	616,997	982	0.2	57,488	9.3
농 가 인 구 (명)	6,661,322	133,319	2.0	1,579,214	23.7
- 남 자 (명)	3,278,764	66,876	2.0	740,531	22.6
- 여 자 (명)	3,382,558	66,443	2.0	808,683	23.9

주: 0.1ha 미만 계층은 무경지농가를 포함하며, 경지면적은 총농가(개인농가, 준농가)의 수치임.

자료: 1990년도 농업총조사.

논면적이 7.4%, 밭 면적이 9.5%에 불과하다.

이러한 영세농가가 앞으로도 농가로서 유지되고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농가 통계에서 파악되어야 하는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농가 통계의 조사 대상이나 조사 방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준농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더욱이 準農家에 대해서는 (표 3-4)는 농업센서스에 의한 준농가 수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3-4 센서스에 의한 준농가 수의 변화

단위: 개소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합 계	2,746	4,052	2,482	1,468
- 학 교	1,880	2,184	NA	521
- 정 부 기 관	153	320	NA	282
- 종 교 단 체	378	645	NA	274
- 기 업 체	-	-	NA	231
- 기 타	335	903	NA	160

주: 1960년의 협동조합은 기타에 포함하였으며, 1980년도의 세부내역은 공표되지 않은 관제로 알 수 없다.

자료: 농업센서스, 각년도.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 센서스에서는 준농가의 수가 2,746개소로 조사되었으나, 1970년 센서스에서는 4,052개소로, 1980년 센서스에서는 2,482개소로, 그리고 1990년 센서스에서는 1,468개소로 나타나 준농가 역시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시기에 따라서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준농가의 종류에 따라서는 년도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록이 심한 것은 학교로서 1970년에는 2,184개소였던 것이 1990년에는 불과 521개소로 줄었다.

이 표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로 분류되지 않는 준농가, 즉 기업체 혹은 기타 단체의 동향이다. 이들 준농가 역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업체에 관해서는 1990년도부터 별도의 분류를 하고 있듯이 개인농가에 대체되는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성립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농가의 성격 변화와 그 구조

앞 절에서 농가 통계의 총체적인 변화와 그 구조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총체적인 변동은 결국 농가의 성격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농가 호수의 감소는 단지 ‘농가답지 않은 농가’인 영세농가가 非農家로 전락하는 과정이 아니라 ‘농가다운 농가’의 분해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먼저 농가 구조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5)는 농지 개혁 이후 농가의 동향에 관한 주요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1950년대와 1992년 현재의 농가 지표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 농가 호수는 218만호에서 164만호로 감소하여 연평균 1만호 이상의 농가가 이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수의 감소에 따라서 호당 경지면적은 0.9ha에서 1.26ha로 증가하

였으나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1,000평의 경지가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소유지는 0.8ha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임차지는 8% 수준에서 37% 수준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경지규모 확대를 임차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호당 경지면적이란 결국 전체 경지면적을 총농가수로 나눈 의미이므로 총농가 수의 증감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 확대를 所有地와 賃借地로 구분해 볼 때 1975년을 전후로 하여 소유를 중심으로 한 규모 확대와 임차를 중심으로 한 규모 확대가 반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농가를 전겸업별로 구분하면 전업농가는 89%에서 62%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에 겸업농가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가구원은 6인에서 3.5인으로, 가구원중의 농업 종사자는 3인에서 2.1인으로 감소하였다.

표 3-5 농가의 주요 지표 변화

년 도	농 가 호 수		가 족 규 모		호 당 경 지 규 모			농 가 소 득	
	전업율	가구원	농업자	경영지	소유지	차지율	총 액	농외바울	
	천호	%	인	인	ha	ha	%	천원	%
1951	2,184	89.2	—	—	0.90	0.83	8.1	—	—
1960	2,349	90.7	—	—	0.86	0.74	13.5	—	—
1965	2,507	90.8	6.31	3.12	0.90	0.75	16.4	112	20.5
1970	2,443	67.7	5.81	2.91	0.93	0.77	17.6	256	24.2
1975	2,285	80.6	5.57	2.86	0.94	0.81	13.7	873	18.1
1980	2,155	76.2	5.02	2.49	1.02	0.80	21.3	2,693	34.8
1985	1,926	78.8	4.42	2.48	1.11	0.77	30.5	5,736	18.5
1990	1,767	59.6	3.77	2.20	1.19	0.75	37.4	11,025	25.8
1992	1,641	62.5	3.48	2.13	1.26	0.79	37.2	14,505	30.5

주: 이전소득은 농외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농림수산통계연보,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전업농가의 비율이 감소함과 함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소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92년도의 농가소득은 1,451만원이며, 농외소득의 비율은 30.5% 수준이다.²⁾

이상에서 농지 개혁 이후의 농가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원래 영세한 경지 규모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농업경영 구조는 농지 개혁을 통하여 경작농지를 자작지화하면서도 1967년까지는 농가 호수의 증가로 인하여 경영규모의 영세화를 심화시켰다. 그 후 농가 호수의 감소에 따라서 잔류농가의 호당 경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동시에 규모 계층별로 분화가 계속되면서 영세농의 해체와 대농층의 증가라는 농가의 양극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2.1. 농업경영 구조의 변화

앞에서 개괄한 농가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 먼저 농업경영의 측면을 정리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농업경영 구조는 경영 규모, 소득 규모, 그리고 부문 조직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요소가 농업경영의 성격을 특징지우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먼저, 경영 규모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自作地의 減少이다. 농지 개혁 당시에는 경영면적 0.9ha 중에서 소유지가 0.83ha로서 이 자작지 규모는 1975년경까지만 하더라도 증가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의 자작지 비율은 6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는 임대차 및 수위탁 증가와 지가 상승에 따른 소유지와 임대차의 대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규모계층별로 보면 0.5ha미만 계층에서는 1971년을 기점으로, 0.5~1.0ha에서는 1972년, 1.0~1.5ha에서는 1974년, 1.5~2.0ha에서는 1976년, 2.0ha 이상에서는 1977년을 기점으로 각각 자작면적이 감소

2) 농가소득은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며 1992년도부터는 농외소득에 이전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별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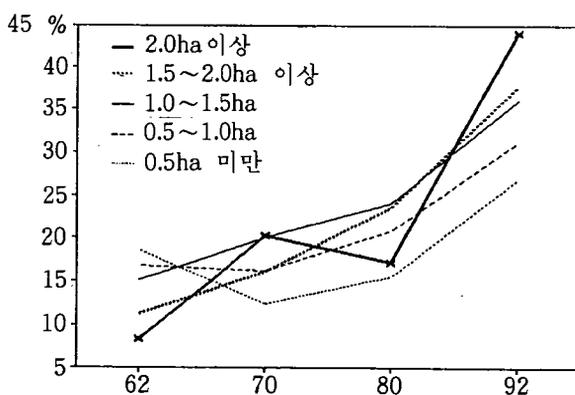
하고 있다. 이 시기는 대체로 規模別 土地純收益의 資本環元 地價 (수익지가)가 실세지가에 근접한 시기와 일치한다.³⁾

특히, 자작지와 임차지의 대체 경향은 대농층일수록 오히려 가속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에도 농업의 수익성 및 농지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임대차에 의한 규모 확대의 경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농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여 농지가 생산요소로서 보다는 자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게다가 이농·상속으로 인한 非農民의 農地所有가 증가하여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임대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지 유동화의 수단이 임대차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림 3-2)에서 경영규모별 임대지의 비율을 보면 호당 평균 소유규모가 확대된 1970~75년에는, 특히 대농층일수록 임대지가 감소하고 소유지가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1975년 이후 소유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농층일수록 임대차에 의한 규모 확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 경영규모 계층별 임대지율의 추이



3) 이에 대한 논의는 김정호, "최근의 농지 유동화의 동향과 성격", 「농촌경제」 15: 1, 1992.3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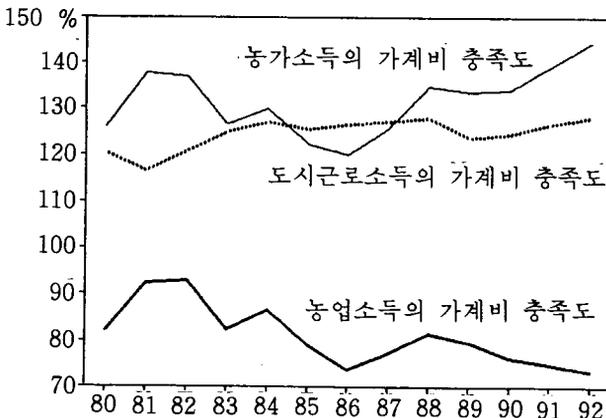
위에서 지적한 高地價와 함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 유동화가 임대차 위주로 편향되는 이유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資本裝備의 大型化·高能率化가 진전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기계화의 급진전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 확대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즉, 소규모 경영보다는 대규모 경영에서 자본 집약도 및 자본 생산성이 높고, 이러한 자본 장비에 대한 투자가 증대함으로써 지속적인 규모 확대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지규모별로 농가의 분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농가에서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혹은 농작업을 수탁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다.

다음으로 소득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향상되고 있으나, 그 구성을 살펴보면 농업소득 보다는 移轉所得 혹은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율은 1960년대의 80% 수준에서 현재는 50% 수준으로 하락하여 1992년의 농가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이 19%, 농외소득이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도시가계(도시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가계비 충족도) 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나,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림 3-3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의 추이



이렇게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농외소득 혹은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농가간의 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대규모 농가에서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외소득 혹은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60년에는 0.5ha 계층에 비하여 2ha 이상 계층의 농가소득이 3배 이상에 달하였으나, 1992년에는 1.8배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소득 구조의 변화는 전업농가의 감소와 겸업농가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노동력 구조에서 다시 고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겸업농가가 증가하면서 규모간에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1992년 통계에 의하면 총농가 수 164만호중 전업농가는 103만호이고, 전업농의 규모 계층별 점유율은 0.5ha 미만 층에서 51%, 0.5~1.0ha 층에서 62%, 1.0~1.5ha 층에서 69%, 1.5~2.0ha 층에서 71%, 2.0~3.0ha 층에서 73%, 3ha 이상 층에서 75%등으로 1ha 이상의 농가에서는 전업농가 비율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농가가 階層 分化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농업소득이라는 점이다. 즉, 앞에서 검토한 규모 계층별 농가의 분화에서 나타나는 分化 分岐點이 대체로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 규모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즉, 1960년대에는 1.0ha 정도에서 농업소득으로 가계비가 충족되었으나, 70년대에는 1.0~1.5ha, 80년대에는 1.5~2.0ha, 그리고 1990년부터는 2.0ha 이상의 계층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에도 분화 분기점은 계속 상향 이동될 전망임을 예견할 수 있다.

끝으로 영농형태의 부문조직의 동향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영농형태별 농가 통계는 충분하지 못하며, 더욱이 1960년 이후의 센서스 자료에서 일차적인 계열의 수치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농가 동향의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동향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표 3-6)은 농업센서스에 의한 영농 형태별 농가 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를 보면 대체로 경종농업의 감소와 시설농업의 증가현상이 눈에 띈다. 특히, 농가수의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는 작목은 전작과 채소 등의 일반 발작물, 그리고 양잠이다. 또한 증가하는 작목은 과수와 축산이며, 1990년부터는 화훼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표 3-7)에서 1990년도의 영농형태별 농가의 분포를 보면 논벼 69.7%, 채소 9.8%, 전작 6.5%, 과수 6.1%, 축산 5.0%, 특용작물 2.2%, 화훼 0.4%, 양잠 0.2%, 기타 0.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전문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수는 미미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농가의 주류는 아직도 零細小農의 複合經營의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영농 형태별 농가 수의 추이

단위: 호(%)

	1960	1970	1990
총 농 가 수	2,329,128(100.0)	2,483,318(100.0)	1,767,033(100.0)
미 작	1,789,510(76.8)	1,114,673(44.8)	1,231,839(69.7)
미 작 외 곡 작	436,034(18.7)	319,733(12.9)	—
전 작	—	—	114,132(6.5)
채 소	24,437(1.1)	251,975(10.1)	172,350(9.8)
시 설 작 물	—	19,594(0.8)	—
화 훼	—	—	6,404(0.4)
특 용 작 물	15,609(0.7)	145,259(5.8)	38,545(2.2)
과 수	9,444(0.4)	45,821(1.8)	107,262(6.1)
축 산	1,592(0.1)	190,328(7.7)	88,522(5.0)
양 잠	—	114,875(4.6)	2,785(0.2)
판 매 없 는 농 가	—	281,060(11.3)	—
분 류 불 능	52,502(2.3)	—	—
기 타	—	—	5,154(0.3)

주: 1980년은 영농 형태별 자료가 미비됨.

표 3-7 개인농가의 영농 형태별 경지규모 분포, 1990

단위: 천호, 호

	합 계	0~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이상
총 농 가	1,767.0	469,383	544,457	352,009	191,018	88,404	41,106	43,533
수 도	1,231.8	285,292	406,877	265,641	143,778	67,680	31,399	31,171
과 수	107.3	21,973	32,792	24,725	13,968	6,407	3,261	4,133
채 소	172.4	67,742	49,718	29,291	14,103	5,600	2,446	3,421
일 반	133.2	58,400	33,476	20,395	10,855	4,627	2,143	3,137
시 설	39.3	9,342	16,242	8,896	3,248	973	303	284
특 작	38.5	8,913	8,028	9,057	6,924	3,240	1,229	1,174
화 훼	6.4	4,121	1,330	475	204	84	30	113
전 작	114.1	63,183	26,559	11,706	6,334	2,793	1,526	2,016
축 산	88.5	27,352	17,283	10,200	5,231	2,428	1,159	1,387
양 잠	2.8	672	956	654	275	129	40	59
기 타	5.2	3,455	914	260	111	43	16	58

주: 합계는 천호 단위이며, 무경지 농가는 0.5ha 미만 계층에 포함됨.

자료: 1990년도 농업총조사.

2.2. 농가의 노동력 및 가족 구조의 변화

앞에서 검토한 농업경영의 성격 변화는 농가 내부적으로는 농가 구성원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미 농가의 개괄적인 동향에서 지적하였듯이 농업 노동력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족의 구성원 수를 보면 1960년대의 6인 수준에서 1992년 현재에는 3.5인 수준으로 거의 반감하였으며, 농업 종사자 수도 3인에서 2인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농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또한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집약적 농업경영은 축소하고, 나아가서는 경영의 유지가 곤란한 농가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부족한 노동력의 농기계 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작업 수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그러나 농가 통계에서 가구 구성 및 농업 노동력 수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專兼業의 상황일 것이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겸업별 농가 비율은 다소 변동의 폭

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1980년까지는 전업농가가 전농가의 약 7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90년 조사에서 6할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특히, 겸업농가의 증가는 경영주 보다는 가구원의 겸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8 전업농가 및 겸업농가의 구성비 추이

단위: %

구 분 년 도	전업 농가	겸 업 농 가		
		계	경영주 겸업	가구원 겸업
1960	73.4	26.6	-	-
1970	67.7	32.3	20.2	12.1
1980	76.2	23.8	7.3	16.5
1990	59.6	40.4	9.6	30.8

자료: 농업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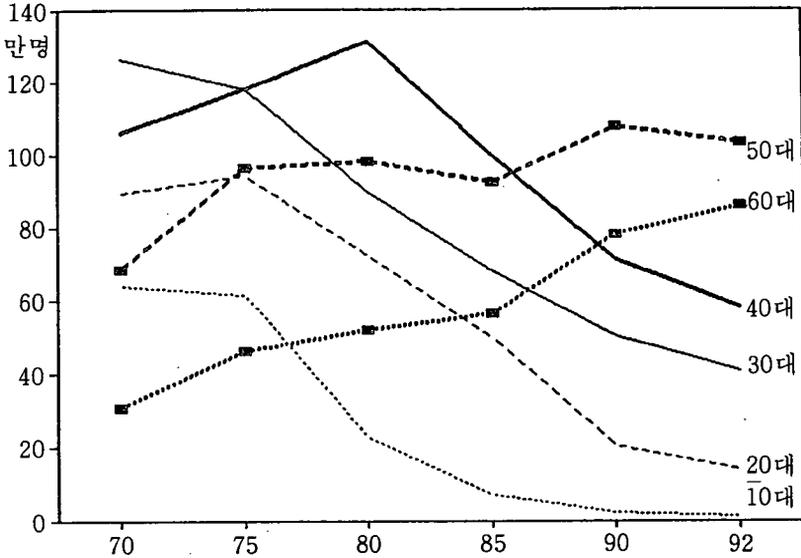
그러나 농가 분화의 동향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는 농업 취업자의 수와 그 분포에 따른 농업 노동력 구조와 직결된다. 또한 이들의 가구 구성이 중요하다. 농가의 감소는 달리 말하자면 농업 취업자 세대의 소멸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노동력 구조의 변화를 볼 때에 農業 就業者의 絶對的 減少와 高齡者 中心의 人力 構造가 가속화하고 있으나, 이를 어느 단계까지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판단이 향후의 농업구조를 전망하기 위한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1975년에 534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감소와 고령층의 증가 추세가 현저하다.

그 결과 1992년 현재의 농림어업 취업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50대가 최빈층을 이루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연령 계층이 62.4%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가의 고령화는 차후 은퇴를 통한 후계 세대로의 경영 이양을 수반하므로 농지 유동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경영규모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앞으로 농업경영을

그림 3-4 연령별 농업 취업자 수의 추이



담당할 주체가 불확실할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계자가 없는 가구 구성으로 농가 자체가 분해되고 있다. 앞으로 경영을 담당할 후계 세대가 취약하여 家族經營의 空洞化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의 노동력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91년에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310개 부락의 농가를 전수 조사한 바 있다.⁴⁾ 이 조사에 의하면 50세미만의 청장년 경영주는 전체의 32%로서 경영주의 고령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이러한 고령농가가 비교적 소농 계층에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즉, 1.0ha 미만의 계층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연령 계층은 60세 이상이며, 1.0ha 이상 계층에서는 50대가 최빈수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대농층에서도 청장년의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이지만

4)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집계표는 김성호외, 「촌락 및 농가실태 조사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1991.12.에 수록되어 있다.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수년내에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농가가 상당수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전망은 (표 3-9)에서 농가의 가족 구성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현재 50대 미만의 경영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족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2~3세대 가구는 전체 농가의 56.7%에 불과하다.

표 3-9 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가족 구성

단위: 호, %

가족구성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계
독신가구	11 (0.1)	18 (0.1)	36 (0.2)	213 (1.4)	543 (3.6)	821 (5.4)
1 대 가구	17 (0.1)	31 (0.2)	88 (0.6)	870 (5.5)	1,856 (11.3)	2,862 (17.7)
2 대 가구	118 (0.8)	1,065 (7.0)	1,977 (13.1)	3,076 (20.3)	1,582 (10.5)	7,828 (51.6)
3 대 가구	42 (0.3)	621 (4.1)	820 (5.4)	990 (6.6)	910 (6.0)	3,383 (22.3)
기 타	12 (0.1)	44 (0.3)	31 (0.2)	82 (0.5)	99 (0.7)	269 (1.8)
계	200 (1.3)	1,779 (11.7)	2,952 (18.5)	5,241 (34.6)	4,991 (32.9)	15,163 (100.0)

자료: 촌락 및 농가실태 조사결과(1991년 4월 조사).

또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농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가구는 농업경영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지만, 3세대 경영주의 연령층이 자체 상승하고 2세대로부터의 이행 전망이 약하기 때문에 3세대 가구도 향후 급속히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농가의 노동력 및 가족 구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가족 구조가 향후의 농가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농가 통계가 단지 현재의 농가 여건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의 발전 의향이 보완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농가 통

계의 역할이 과거와 현재의 농가 성격을 비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미래의 전망까지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필요한 조건은 농업경영의 측면의 영농자산, 즉 토지, 건물, 농기계 및 시설, 대동물 또는 대식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 구성에서도 기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참여하고 있고, 나아가서 계속적인 영농 의향과 발전 의지가 있는 농가로 요약할 수 있다.

3. 농가 통계의 의의와 한계

3.1. 농업경영 단위로서의 농가의 의미

농가의 정의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파악되는 농가가 농업 정책이나 농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농가의 모습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1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규정되는 農家의 最低 基準이 우리 농업의 영세성을 전제로 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단적으로 1950년대에 정해진 경지면적의 하한 기준 10a가 그대로 현재의 농가 정의에도 존속되고 있으나, 시설원예나 축산은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지면적을 가지고도 과연 농가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상업농화 추세에서 농가의 기준으로 대두되는 것이 ‘농업 생산의 단위’로서의 농산물 판매액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는 조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가축의 사양두수에 대한 농가 분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3-10)은 1990년 농업총조사에서 주요 작목별 및 영농형태별로 농가 수와 경영규모를 집계한 것이다. 이를 보면, 특히 밭 작물의

표 3-10 주요 작목별 농가 수와 경영규모, 1990

단위: 천호, 호

작 목	재배농가수	재배면적	평균규모	재배농가수의 50%를 점하는 계층
논	1,505천호	1,186천ha	0.79ha	0.7ha 미만 (885천호)
벼				
겉보리	102	33	0.33	0.3ha " (59 ")
쌀보리	191	63	0.33	0.3ha " (108 ")
콩	925	105	0.11	0.1ha " (651 ")
고추	1,160	87	0.08	0.1ha " (965 ")
마늘	846	53	0.06	0.1ha " (725 ")
양파	87	9	0.11	0.1ha " (59 ")
옥수수	132	21	0.16	
감자	387	24	0.06	
고구마	414	28	0.07	
참깨	846	50	0.06	
들깨	576	24	0.04	
사과	71	44	0.62	0.5ha 미만 (42천호)
배	16	9	0.56	0.3ha " (7 ")
복숭아	40	12	0.29	0.3ha " (26 ")
포도	35	11	0.31	0.3ha " (22 ")
한우	609	1,588천두	2.6두	1~2두 미만(464 ")
젖소	34	485	14.1	10두 " (14 ")
돼지	139	4,204	30.1	1~4두 " (91 ")

주: 옥수수,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등은 재배면적의 구분이 불가능함.
 자료: 1990년도 농업총조사.

경우에는 소위 농가의 하한규모인 10a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전체 재배농가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영세한 규모이다. 이렇게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 다시 세분류하여 영농형태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전통적인 농가의 성격이 현저하게 바뀌어 왔으나, 이를 통계에서 단계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地主로 일컬어지는 '토지보유자'계층이다. 특히, 재촌

지주는 대부분이 소규모의 자급적 농가인 自賃農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농기계가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듯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기는 위탁영농이 성행하여 이미 '영농을 행하는 세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통계적으로 농가를 축소하여 규정하거나 어느 정도의 생산 단위가 되는 농가만을 선택하여 조사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기본조사인 농업센서스는 농업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 내지 생산수단,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물을 총량적으로 파악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⁵⁾

이렇게 볼 때 농가 통계에서 정의하는 농가란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단지 統計技術上의 定義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농업 생산단위로서의 농가'와는 괴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가 통계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농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다는 오히려 농가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농가 분류를 통하여 작성된 계층별 통계 중에서 통계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서 농가 계층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이미 작성된 농가 통계에서 통계 이용자가 진정한 의미의 농가, 즉 농업 생산단위로서의 농가를 다시 구분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통계적인 농가 분류에서 주어진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농업센서스에서 파악된 하한 규모 이상의 농가를 생산 단위의 측면에서 다시 재분류할

5) 농업총조사는 농가, 농가인구, 농경지, 작물 수확면적, 가축, 가금, 농기계, 문화 시설 등 농업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 추세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국가 경제 종합개발 등 제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농업관련 학술연구 분석자료 이용 및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정비, FAO 회원국간에 비교 가능한 농업통계 자료를 작성 교환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 농업총조사의 조사 목적).

수 있는 지표는 경지구모 혹은 작물의 재배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最小限의 農家 規定도 중요하지만, 농업 생산의 단위로 분류될 수 있는 지표되어야 하는지는 농업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통계 이용자가 농가 통계에서 사회적·경제적 의미를 가진 농가, 즉 농업 생산단위로서의 농가를 분류하기 보다는 통계 조사에서 이러한 집단을 확정하고,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2. 다양화하는 농업경영체의 형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업 통계는 그 시발부터 전통적인 세대 단위의 농가를 생산 단위로 파악하여 '농업을 행하는 가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렇게 본래 家計의 單位인 世帶(농가)를 생산의 단위(農業經營體)로 간주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경영과 생활이 미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원의 협업체제에 의하여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일찌기 '家'라는 단위의 농업경영체가 전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家族農의 전제는 농가의 성격 변화에서 살펴 보았듯이 노동력의 농외 유출이나 상업농화의 진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였다.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家族勞作的인 自作農은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농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게 되고, 이를 수탁받는 주체로서 기존의 농가로 정의되어 온 가족농 이외의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나타났다. 이들은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된 생산 단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 몇 가지 형태를 정리한 것이 (표 3-11)이지만, 여기에 열거하지 못한 형태도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1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의 실태

종 류		내 용	사 업 체 수
현 행 통 계 상	학 교	학교농장, 실습포 등 시험 연구용	521개소
	정 부 기 관	농업시험장 등 정부기관의 사업목적	282
	종 교 단 체	사찰 등이 식량자급을 위한 목적	274
	기 업 체	정관에 의한 농업경영 목적	231
	타	임의조직이나 집단의 농업경영	160
미 포 합	영농조합법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		165
	위탁영농회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		483
	작목반(농협 지원조직)		15,917
	협동출하반(농협 지원조직)		12,425

주: 학교,정부기관,종교단체,기업체,기타 등은 농업총조사(1990)의 결과.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는 농림수산부 구조정책국 자료(1993.6).
 작목반, 협동출하반 조직은 농협 자료(1991.12).

위에서 열거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를 크게 나누면 스스로가 농축 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그리고 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특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내지는 조직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통계적인 위치는 어떠한가? 물론 이 중에는 엄밀한 의 미에서 농업경영체라고 불릴 수 없는 형태도 존재할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경영체가 농업 생산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총량적인 파악은 소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제까지의 통계에서 농가를 단위로 한 조사와 농업 생산에 관 계되는 농가 이외의 사업체나 조직에 관한 조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 았던 것에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개별 농가의 농업 활동이 외부의 사업체 또는 조직과 어떻게 연관되면서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계적 인 파악이 소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를 농가 통계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 면 그동안 농지제도를 비롯한 농업 정책에서도 농가(가족농)만을 농업 생산의 단위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는 그 성격 조차 모호한 ‘準農家’로 표현하여 개별 농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가 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화하고 있는 농업 생산의 단위를 수용할 수 있는 정의 및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알맞게 조사 방법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농가의 정의와 분류 체계의 정립 방향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전통적인 농가의 성격은 크게 변모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성격 변화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농가와 통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농가의 분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인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분야가 '農業生産의單位'인 농가의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개별 농가의 농업 생산과 연계되고 있는 농가 이외의 농업 경영체 의 동향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가의 정의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농업 생산의 단위로 분류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앞으로 전망되는 농업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이미 검토한 현행 농가 통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개선 방향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방

안의 현실적인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 조사의 체계와 방법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임을 밝혀 둔다.

1.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전망

1.1. 농가의 계층 분화

먼저, 앞으로 전개될 농가 구조의 변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농업 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가의 계층 분화와 경영 규모의 동향이다. 이에 관한 전망으로 비교적 확실시되는 것은 농가의 감소는 영세규모의 고령농가 계층이 중심이 될 것이며, 이들의 보유 농지가 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가에게 집중적으로 이용되기 위한 농지 유동의 조건이 성숙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업농일수록 규모 경계를 실현하여 농지 구입능력이나 임차료 지불능력이 강하다고 하는 판단이다.

둘째는, 技術進步의 측면으로서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및 영농의 기계화 : 시설화 추세는 고령농가 보다는 청장년 농업 취업자에게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농가의 기술 혁신은 계속적인 규모 확대의 동기로 작용하여 농지를 집적할 수 있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농업경영체)와 그렇지 못한 현상 유지 농가로의 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셋째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업농 중심의 인력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구조 개편의 초기에는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농업 노동력의 유출로 인하여 농업 취업자의 부족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지 유동화 및 기술 혁신에 의한 취업 조건이 정비됨에 따라서 청년층의 후계 인력이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지표를 토대로 하여, 특히 경영 규모별로 농가의 계층 분화의 동향을 전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동안 계속되어 온 농가 분화의 동태성에 착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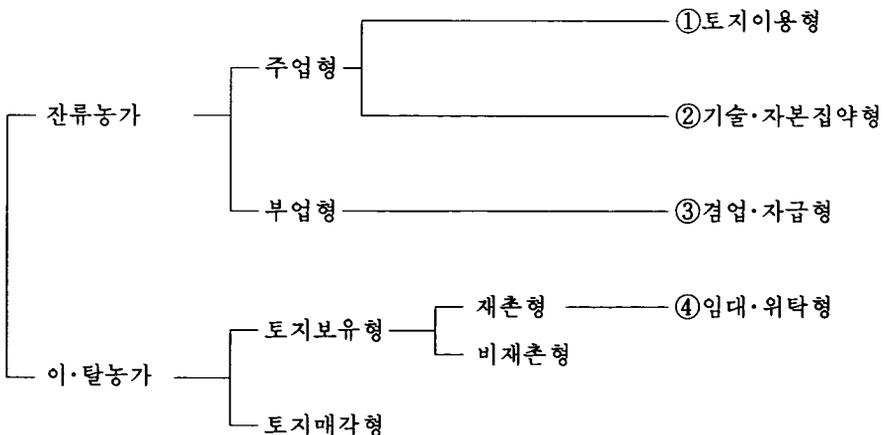
그 첫번째의 유형은 규모 확대 지향 농가로서 농업이 주된 수입원으로 농업경영에 의욕적이며, 소득의 향상 및 자본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농가이다.

두번째의 유형은 현상 유지 지향 농가로서 농업이 주된 수입원이지만 노동력 및 자본장비 보유 정도에서 의욕적으로 규모 확대를 꾀하기 보다는 현재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이다.

세번째의 유형은 규모 축소 지향 농가로서 경영주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 등의 이유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농가이다.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농가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한 것이 (그림 4-1)이다.

그림 4-1 농가 분화의 유형 구분



먼저, 土地利用型 農家層은 대규모의 상업적 농가 및 소규모의 자급적 농가를 포괄한다. 이들 농가는 토지이용형 농업으로부터 주된 수입을 얻으며, 보유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토지이용형 농업에 종사시키고 있는 농가 계층이다. 또한 자작지와 임차지를 포함하여 비교적 많은 면적의 경작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농가 계층은 현재도 농가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는 급속히 계층 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규모 확대를 추구하여 대규모 경영으로 발전하는 계층과 겸업화 정도를 강화하여 토지이용형 농업으로부터 탈락하는 두 가지 방향이다. 특히, 고령농가는 농업 경영에서 은퇴할 때까지 판매보다는 자급 식량을 확보하는 정도의 과도기적인 농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의 施設園藝·畜産主業型 農家層은 주로 기업적인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이다. 이 농가 계층은 주된 수입원이나 경영의 주목적이 시설형 농업 또는 축산 농가이며, 이 농가층에서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의 지위는 부차적이거나 복합경영의 한 구성 부분에 불과한 성격이 된다. 그리고 농업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므로 지역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도층의 성격도 가진다.

세번째의 安定兼業型 農家層은 주로 부업적: 자급적인 농가이며, 주된 수입원을 농업 이외의 겸업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이다. 이 농가 계층은 농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계와 주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을 유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겸업에 관계없이 영농에 종사하고 부분적으로는 농지를 자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농지 유동화에는 최대의 저해 요인이 되는 특성을 지닌다.

네번째의 作業委託·土地資産家型 農家層은 주로 부업적인 농가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기간 노동력을 보유하지 못하므로 대부분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지를 임대하는 계층이다. 이 계층에 있어서 농지는 경영수단이 아니라 이윤 획득을 위한 자산이며, 또한 많은 경우 농업에서 사실상 은퇴한 상태에 있는 농가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계층의 농가는

이미 농업 생산의 단위가 아니며, 따라서 앞으로도 농가로 규정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1.2. 농업경영체의 분화

1.2.1. 가족농의 전망

장래의 농업을 전망할 때에도 현재와 같은 농가(가족경영)가 존속되리라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相續農家は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제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농가’(farm household)와 ‘가족농’(family farm)은 개념상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농은 농업의 세대적 승계를 전제로 한 직계 가족만의 경영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은 당대의 세대주가 선택해야 할 직업이며, 이를 자식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업경영 형태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농업 경영이 지금까지와 같이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것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요소의 경쟁조건이 성숙함에 따라서 전통적인 家族勞作的 農業經營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4-2 농업경영 형태의 발전 과정



따라서 장래의 가족농 중에는 경영 자원을 세대적으로 계승하지 않는, 즉 종래의 상속농가가 아닌 創設農家까지도 포괄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족경영이 세대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으나, 그 계승은 어디까지나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다음 시기의 직업 선택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래의 가족농은 세대적으로 계승될 가능성은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1代 限定 家族經營 내지는 夫婦 單位의 家族經營을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만약 장래에도 다수의 가족경영이 세대적으로 무리없이 계승된다고 하면 그 사회의 직업 윤리관은 오늘날의 사회와 다른 사회일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경영(one man farm)이 성립되고 있는 실태를 근거로 하여 농업의 個人經營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一人經營이 광범하게 존재하게 되면 '개인경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경영의 논리에 따르면 가족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친자간의 업무상 협력 혹은 雇傭關係가 확실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버지가 활동적으로 일하는 동안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버지와 아들을 농업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개별적인 인격 주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夫婦經營인 경우에는 경영에 종사하는 부부 각각에게 소득의 배분 혹은 임금의 지불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처리에 불과하다. 자식의 경우와 달리 부부는 동일 가계에 속해 있는 것이 지배적이고, 더구나 부부 공동의 가계인 우리 나라의 현실로 볼 때 부부 단위의 가족경영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부 단위의 경영이라도 장래는 가계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한 개인경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영상의 위험 부담을 가계에, 그리고 가계의 영향을 사업 투자에 미치지 않는 것이 농업 경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2.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의 전망

앞으로 우리 농업에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가 폭 넓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별 농가가 농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이 약화되면서 지역 농업을 담당할 새로운 경영 주체가 성립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표 4-1)은 농가를 대상으로 소위 기업농(기업체의 농업경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보면 기업농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41%인 반면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 그리고 관심 없다는 의견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도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이나 하듯이 이미 현실적으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가 다양하게 출현되고 있다. 이들 경영체는 기존 농가의 결합형태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농업경영의 형태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 몇 가지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기관에 의한 농업경영이다. 공기관이란 이미 준농가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 기관을 말한다. 특히, 낙도나 산간지역에서는 휴경농지가 증가하면서 이를 공기관이 대리경작하는 경우가 발

표 4-1 기업농에 대한 농가의 의견

단위: %

		금지해야 한다	허용해도 좋다	관심없다	합 계
영 농 형 태 별	답 작	41.2	35.3	23.4	100.0
	전 작	43.2	35.1	21.6	100.0
	시설원에	15.4	46.2	38.5	100.0
	과 수	33.3	50.0	12.5	100.0
	축 산	62.5	37.5	0.0	100.0
합 계		40.6	37.3	22.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2.11).

견되며, 도시 근교에서는 市民農園과 같은 형태도 발전하고 있다. 이들 농업경영체는 가족농의 쇠퇴를 보완하는 과도기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으나, 당분간은 농가의 감소에 따른 새로운 농지 이용·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농가가 출자한 法人經營이다. 이 형태는 현재 영농조합법인에 한정되고 있으나, 조합 형태 이외의 법인이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農產法人과 같은 회사 형태의 경영체이다. 또한 현재는 농민이 출자하고 그들이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구성원과 자본을 확대하여 資本家的 經營으로 변신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있다. 혹은 농외 자본이 그러한 농가 출자의 법인을 발판으로 하여 농업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셋째는, 農外 資本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한다는 것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농외 자본은 기술 개발의 분야에서 이미 농업을 앞서가고 있으며, 그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농업경영체를 창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넷째는, 농협이나 농외자본이 會員契約(franchise) 형식을 빌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족경영을 산하에 흡수하는 형태로 농업경영의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 단위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영관리 능력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갖는다. 이미 축산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그러한 경영이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농업 경영은 농가와 그밖의 농업경영체로 구분되어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농은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으며, 뛰어난 능력과 의욕을 가진 농가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속하지 못하는 농가는 이농하든지 사회적인 농업 생산 주체로서의 의미를 잃는 것으로 변해가든지 혹은 계열화를 통하여 자

본가적인 농업경영에 편입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구조 조정이 농업에서도 다양한 경영체를 필요로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농업 여건이 불리한 낙도나 산간지 등에서는 지역 농업이 소멸될 위기에 있으며, 더욱이 영농 후계자를 확보할 수 없는 농가가 대부분인 지역에서는 농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업 경영에 대한 기존 농가 이외의 참여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지역 농업 내지 국토 자원의 유지를 위한 당연한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2.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

2.1. 농업경영체로서의 농가의 성격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속에서 먼저, 농가란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경영체인가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농가의 농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은 家族經營이라는 점이며, 즉 “가족을 단위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가족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영”을 의미한다. 이를 家族勞作經營이라고 불러 왔다. 이러한 가족경영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족 단위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영이다. 즉, 특정한 가족원 1인 혹은 복수의 가족원의 협의에 의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가족원의 노동력 공급과 가족원간의 협력에 의해서 영위된다. 경영주를 포함하여 가족원이 농업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공급하며, 작업에 따라서는 적절히 공동 혹은 분업을 취한다.

셋째, 가족원은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하여 아버지와 자식, 형제 등 소수

근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그리고 경영의 승계는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농가는 가족경영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기본으로 하여 건실한 경제 주체로서 유지될 수 있는 농업경영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自己雇傭이라는 형태의 노동력(가족노동력)이 갖는 상대적 유리성이다. 이에 비하여 가족경영이 아닌 경우에는 타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내지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타인 고용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찾기 위한 비용을 비롯하여 노동 계약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만, 가족 노동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로, 기업경영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지만 가족경영에서는 대체로 混合所得을 추구하게 되므로 그만큼 불황에 대한 강인성을 갖는다. 실례로 기업경영은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도산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가족경영은 최소한 자기 노동력에 대한 보수를 얻을 수만 있으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가족경영은 가족의 유대를 기초로 한 小規模 人的組織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물론 가족경영이 아닌 경우에도 소규모 경영에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강조되지만, 이에 더하여 가족경영에서는 혈연 관계를 토대로 한 인적 조직이라는 강점이 있다.

넷째는, 後繼者에 대한 經營教育 機能과 유연한 經營 承繼가 가능하다. 농업경영은 유기적인 생산 과정이므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수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利點이다. 특히, 가족경영에서는 후계자에 의한 경영체의 승계와 경영의 지속적인 유지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반면에 가족경영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경제 주체로서 家計와 經營의 分離가 어려우며, 경영 단위로서도 人的(노동력) 結合 및 資本 結合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농업경영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화된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서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생산 요소의 조달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가족농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으로서는 덜 발달된 형태일 수밖에 없는 특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경영은 혈연 관계에 의하여 존속되기 때문에 만일 후계자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해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경영의 세습적 계승이 갖는 불리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농적인 협업경영이 대두되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소규모 경영이라는 특질 때문에 경제주체의 성격에서도 경영(생산)과 가계(소비)가 분리되기 어려우며, 나아가서 혼합소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농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존속이 세대 단위의 승계, 즉 家系의 계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2.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농업경영의 형태는 가족경영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임의의 협업경영과 법인경영 등이 성립·발전하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산조직으로 불리는 경제조직 가운데에서도 독립적인 경영체로 보아야 하는 형태가 다수 성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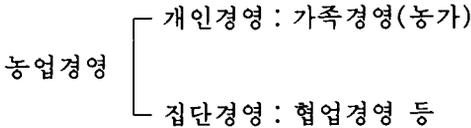
따라서 이들 농업경영체의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분류는 일반 경영학에서는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농업경영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분야이다.

그러나 농업 형장에서는 어떠한 농업경영체의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체로서의 성격이 상이할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을 둘러싼 제반제도와 관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적 유리성 혹은 상대적 불리성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농업경영도 근대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야 하는 만큼, 농업경영이 어떠한 경영 형태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경영 전략

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이러한 경영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한다.

먼저, 농업경영의 경영적 성격이라는 점으로부터 주목하여야 할 경영형태의 유형은 個人經營과 集團經營이다.



이 구분은 농업경영의 소유자(출자자)가 단일인가 또는 복수인가 하는 점에서의 구분과, 경영자가 단일인가 혹은 복수인가 하는 점에서의 구분이라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가족경영은 물론 집단경영에 있어서도 경영자는 소유자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유·경영·노동의 3개 기능은 언젠가는 분리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리의 형태는 농업경영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현저히 다양하게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을 개인경영과 집단경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소유자가 단일인가 혹은 복수인가 하는 점에서의 구분은 전형적으로 말하자면 資本의 調達條件과 관련되어 있다. 거액에 달하는 자본(자금이나 토지)의 조달은 단일한 소유자(출자자)로 이루어진 개인경영보다는 복수의 소유자(출자자)로 이루어진 집단경영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둘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경영으로서의 가족경영은 물론이고, 임의의 협업경영이나 법인경영의 대부분이 소유자가 경영자이고, 동시에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수한 경영자를 조달(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인경영보다는 집단경영에서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가족경영에 있어서 영농후계자의 확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있는 것, 경영자의 세대 교체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본 농

업경영의 효율성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해 가는 것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 등을 배경으로 하여 農業經營의 繼續性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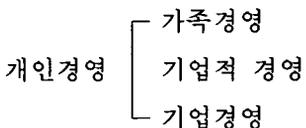
이러한 농업경영의 계속성은 개인경영이나 집단경영 모두의 경우에도 후계 경영자를 확보하는 것, 즉 후계 경영자의 신규 참여를 확보하는 것을 불가결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만으로 말하자면, 신규참여의 조건은 신규 참여시의 후계 경영자의 신규 투자액, 경영교육의 경영내 환경, 잠재적 후계경영자의 범위 등의 점에서 볼 때 개인경영보다는 집단경영이 보다 유리한 경영 내부조건을 가지고 있다.

넷째, 경영자가 단일인가 혹은 복수인가 하는 점에서의 구분은 무엇보다도 농업경영의 經營 管理의 效率과 관련되어 있다. 경영 관리의 기능은 다양하고 또한 그 영역은 광범위하게 걸쳐있지만, 그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이다.

또한 단일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개인경영(단일 의사결정 주체)가 행하는 의사 결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반면에, 복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집단경영(조직적 의사결정 주체)가 행하는 의사 결정은 신속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적이 되기 쉽다.

다른 한편 개인경영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경영관리에 관하여 分業의 利益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집단경영에서는 그 가능성을 많이 갖는다. 이 점에서는 개인경영에서 보다도 집단경영에서 경영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을 갖는다.

둘째로, 주목하여야 할 경영 형태는 개인경영이 家族經營이나 아니면 企業經營이나 하는 점이다.



이 구분은 노동력의 공급을 주로 家族 勞動力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雇傭 勞動力에 의존하는가 하는 점으로부터의 구분이다. 현재 농업에 있어서 전형적인 기업경영은 일부의 작목에서 극히 소수의 형태가 존재하는 정도이고, 가족경영과 기업경영의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을 많이 이용하는 가족경영이 성립·발전하여 기업경영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 착안한다면, 그들을 기업적 경영으로서 전통적 가족경영과 기업적 경영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도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주목하여야 할 경영 형태의 유형 구분은 集團經營에 있어서 任意集團經營(일반적으로 말하는 임의협업경영)과 法人集團經營(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협업경영)의 구분이다.

집단경영 { 임의집단경영=임의협업경영
 { 법인집단경영=법인협업경영

이 구분은 말할 것도 없이 集團經營이 法人格을 갖는가 아닌가 하는 觀點에서의 區分이며, 임의협업경영과 법인협업경영과의 사이에는 농업경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와의 관계, 즉 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法人協業經營은 그 자체가 채권이나 채무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제도 금융의 용자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경영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경영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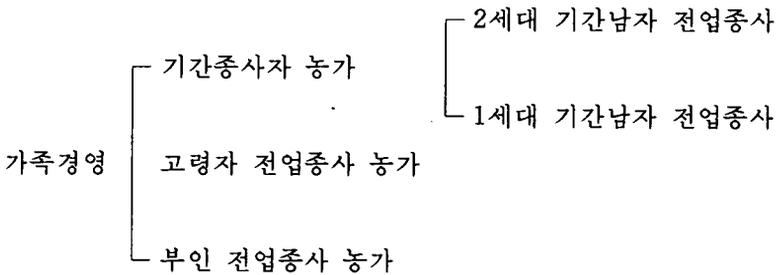
넷째로, 주목하여야 할 경영 형태의 유형은 法人經營이 어떠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느냐의 구분이다.

법인경영 {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 조합법인

이 구분은 법률적 및 제도적 측면으로부터의 구분이고, 특히 토지 이용형 농업경영과 시설 이용형 농업경영의 사이에서 법인 경영의 경영형태의 선택의 가능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 경영은 각각 법률적 및 형식적인 성격을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개인경영으로서의 가족경영의 유형 구분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에 가족경영은 급속하게 변모하여 그 실태는 현저하게 다양화해가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족 노동력 보유상태와 그들의 농업종사 상황이라는 관점, 특히 기간 남자 노동력 보유의 유무 및 전업적 노동력 보유의 관점에서 유형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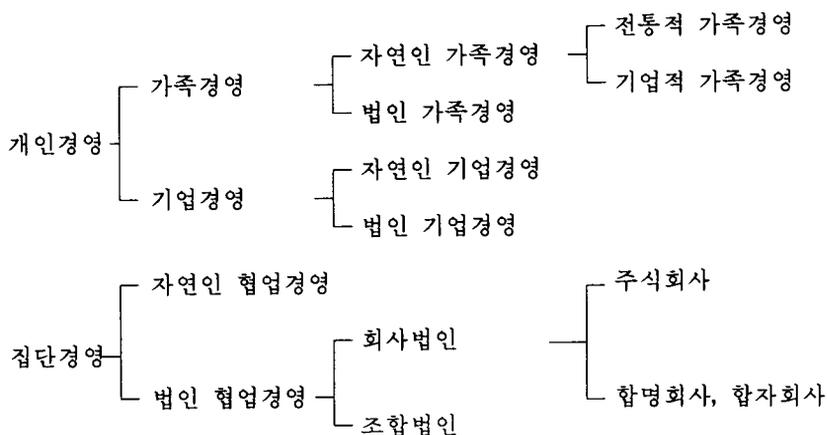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의 유형 구분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가족 노동력 보유상태와 그 농업종사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영목표, 특히 노동력 구성에 대응한 기회보수 합계액이 다르게 된다는 점 둘째, 適人適作·適人適組織의 요건, 즉 노동력 구성에 의하여 채용되는 작목·품목·작형 및 그들의 조합으로서의 경영조직이 다르게 된다는 점 셋째, 노동력 구성에 의하여, 특히 기간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간노동력을 1인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2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외부 의존의 방식은 물론 그와 반대로 보완 조직의 존재 방식이 다르게 된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농업경영의 형태를 정리하면 (그림 4-3)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경영과 집단경영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경영의 소유자가 단일 혹은 복수이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령 가족경영이 법인화된 것이 전부 법인 가족경영은 아니며, 또한 동일한 세대원을 구성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1인인 경우는 법인 가족경영(개인경영)으로, 그리고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법인 협업경영(집단경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3 농업경영체의 형태 구분



3. 농가 정의와 개념 정립의 방향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농업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농가의 농업경영체적인 성격이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농가(개인농가) 이외에 새로운 경영체가 다양하게 성립되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이 농가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영농조직의 동향이다. 이들 영농조직은 아직까지 독립적인 경영 단위로 보기에 는 미숙한 단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共同經營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 통계의 본래 목적이 농업 생산의 총체적인 파악이라는 점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농업 생산의 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간략화할 수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농업 경영적인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3.1. 능가 정의에 관한 농민의 인식

그렇다면 앞으로의 농가는 어떻게 파악되어야 할 것인가? 이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농민들은 농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농가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경제 연구원의 현지통신원 중에서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하여 1993.9~10월 기간 동안에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440명을 회수(회수율 44%)하여 분석하였으나, 설문에 따라서는 불충분한 답변이 되어 전체를 분석에 이용할 수 없었다. 참고를 위하여 조사표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면 평균 연령은 54세로 30대가 6.8%, 40대가 14.8%, 50대가 47.1%, 60대가 31.4%이며, 가족 수는 평균 2.7명이고 독신이 7.3%, 2인이 23.9%, 3인이 18.6%, 4인이 18.9%, 5인이 15.9%, 그리고 6인 이상이 15.5%이다. 또한 가족원 중에서 농업에 조사하는 수는 평균 1.1인이며, 경영주가 농업에만 전념하는 전업농가는 324호(73.6%)이다.

또한 농가의 성격으로서 가계의 생활비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인 농가가 58%로 가장 많으며, 50% 이상의 비율이 25%, 50% 미만인 11.4%, 그리고 농업은 식량 자급에 불과한 농가가 5.7%이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액으로 구분한 영농형태에서는 벼 농사가 55.2%, 노지채소가 3.2%, 시설원예가 9.3%, 과수가 9.5%, 대가축(한우,낙농)이 10%, 중소가축(양계,양돈)1.6%, 특용작물 8.6%, 기타 1.6%, 그리고 판매소득이 없는 농가가 0.9%이다.

표 4-2 농가 정의의 내용에 관한 농민 의견

문항	단위: %	
	응답내용	비율
농가는 농촌에 거주하여야 한다.	반드시 거주해야	43.8
	통작거리라면 무방거주	32.2
	여부와 무관	24.0
농외취업에 전념하는 경우도 농가인가?	농가이다	20.5
	농가가 아니다	79.5
타인의 농작업만 대신해주는 경우도 농가인가?	농가이다	52.4
	농가가 아니다	47.6
농작업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농가인가?	농가이다.	36.8
	농가가 아니다	63.2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농가인가?	농가이다	53.6
	농가가 아니다	46.4
현행 300평 이상인 농가 정의의 규모에 대하여	늘려야 한다	75.8
	그대로도 좋다	21.7
	줄어야 한다	2.6
농업을 경영한다고 할 수 있는 판매액의 범위	100만원 이상	8.6
	200만원 이상	8.4
	300만원 이상	18.2
	400만원 이상	6.1
	500만원 이상	58.7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3. 10).

농가 정의에 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4-2)이다. 먼저 농가의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해야는 반응이 43.8%, 통작거리 한도라면 무방하다는 반응이 32.2%, 그리고 거주 여부와 상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24.0%로 나타났다.

농외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농사일보다는 농외취업에 전념하는 경우에 이를 농가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 20.5%, 농가가 아니라는 반응이 79.5였으며, 또한 타인의 농작업만 대신해 주는 경우도 농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가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 52.4%, 농가가 아니라는 반응이 47.6%로 나타났다.

농작업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농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가라는 반응이 36.8%, 농가가 아니라는 반응이 63.2%였으며,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농가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 53.6%, 이나라는 반응이 46.4%를 차지하였다.

한편 현행 300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 농가 정의의 경지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 하한을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 75.8%로 단연 우세하였다. 그리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로 간주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액의 수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58.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상의 농가 요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답하게 한 결과가 (표 4-3)이다.

집계 결과를 응답이 많은 순서대로 보면, 직접 농사 지어야 한다는 자경 요건이 139명(31.5%)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이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으로 86명(19.6%),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농지 요건으로 81명(18.3%)이었으며,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는 취업 요건과 농업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각각 58명(13.2%) 씩으로 동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한다는 판매 요건은 18명(4.2%)이었다. 농민이 생각하는 농가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가 되는 셈이다.

표 4-3 농가의 필요조건에 대한 농민 의견

		단위: %
응답 내용	응답 수(비율)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거주 요건)	86(19.6)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취업 요건)	58(13.2)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농지 요건)	81(18.3)	
직접 농사 지어야 한다(자경 요건)	139(31.5)	
농산물을 판매해야 한다(판매 요건)	18(4.2)	
농업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소득 요건)	58(13.3)	
계	440(100.0)	

자료: (표 4-2)와 동일.

3.2. 농가 개념의 정립 방향

이와 같이 농가의 개념을 둘러싸고 현장의 농민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도 '농업 생산의 단위'로서의 농가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농가의 정의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어떻게 하면 농가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기존의 농가와 통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가의 정의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농업 생산의 단위로 분류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앞으로 전망되는 농업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는 이미 검토한 농가 통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농가의 개념 내지 현재의 정의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 개념 정립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비농가의 처리 문제 : '농촌가구'개념의 도입

먼저, 농가가 아닌 소위 非農家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앞절의 농민 의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농가와 비농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욱이 농업경영적인 성격이 약화되면서 농촌 내부에서도 개념적인 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주민 모두가 농가였던 농촌 마을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농업 생산 단위로서의 성격 변화이다. 예를 들어 농촌 마을에 자급용의 텃밭 정도만 가꾸는 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당연한 농가이며, 더욱이 이들이 相續農家라고 한다면 농가로서의 지위는 더욱 확고하다. 이들 스스로가 농가임을 꺼려하지 않으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는 어떠한가? 만일 도시 지역에서 소위 下限規模 이상의 경지를 경작하는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때 농촌

지역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들 중에는 스스로 농가임을 포기하는 가구도 적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변화는 농업 종사자, 즉 가족 노동력의 성격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구원의 겸업노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이다. 과거에 농가의 주된 형태였던 世帶主=所有主=經營主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가족 관계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으므로 검증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농가도 점차 핵가족화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점점 농업으로부터 이탈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미 검토한 바와 같다. 결국 농가의 非農家化는 가족 노동력의 분화로 표출되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력 분화의 어느 단계까지를 농가로 간주할 것인가의 과제이다.

셋째의 중요한 문제는 토지이용 방법의 분화에 따른 농지 소유자와 위탁영농, 그리고 영세농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서 생산 단위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과제이지만, 농촌 현장에서도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단지 보유만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급용의 식량 정도를 확보한다. 이들은 주로 과도적인 고령농가로서 부업농이나 취미영농에 가깝다.

따라서 이미 이촌한 농지 소유자는 제외하더라도 재촌 소유자의 부업농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농가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상의 문제는 근본적인 농가 통계의 과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농업 생산의 단위로서의 농가와와는 거리가 멀며, 또한 수적으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농가가 농촌 마을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농업경영적인 농가와 진정한 의미의 농업경영적인 농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農村家口'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촌가구란 용어 그대로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세대)의 의미이며, 농

업경영체인 농가와 그렇지 못한 계층의 농가까지를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2. 농가 정의의 기본방향 : '농업경영체' 개념의 도입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농가와 농업경영체에 관한 개념적인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4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개념 체계



그림에서 표현하였듯이 농가는 경영 단위(생산 경제)인 동시에 가계 단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농업경영 부문만을 떼어낸 것이 '농가=농업경영체'가 되며, 이를 가족경영, 즉 '家族農'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농이 아닌 농업경영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하나는 개인농가의 협업경영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아닌 구성원의 조직체로서 '企業農'의 범주에 속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농가라고 기업농을 구성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앞으로의 농가 통계는 농업경영체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農家 統計보다는 農業經營體 統計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나아가서 개념 정립의 기본 방향은 통계적으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모두 수용하는 체계를 갖추되, 그 분류에서 선별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가의 정의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결국 현행 농가 규정의 下限 規模를 상향 조정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하한을 인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현행 규정을 조정하여 농가를 축소하게 되면 기존의 농가 통계와 일관성을 결여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현행 농가 통계의 대상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분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행 농업총조사의 농가 정의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지 규모, 시설 면적, 가축 두수, 판매 수입 등등의 요건을 단순화하여 耕地의 耕作과 農產物 販賣收入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규정도 초기에는 경작 하한이 중심이었으며, 여기에 간단한 판매수입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알기 쉽게 농가의 판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농산물 수입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느냐 하는 등의 상세규정은 통계 조사원에게 필요한 예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상하에서 농가(농업경영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0a 이상의 경지를 경영하거나 연간 일정액(예를 들면 1993년에는 3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 생산의 단위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소수의 무경지 농가와 농업노동자를 비롯하여 현재 수준의 농가 호수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음은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위의 정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농업경영체는 기존의 가구 단위로서의 농가와 이들 개인농가 이외의 組織經營體, 그리고 농업경영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 ① 農家 : 가족경영으로서의 개인농가,
- ② 組織經營體 : 영농조합법인, 농업 사업체(기업) 등,
- ③ 機關 및 團體 :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농협 등의 세 가지 형태이다.

따라서 개인농가를 구성원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사실상 농업경영을 행하는 회사만 해당)는 조직경영체에 속하게 되며, 이

들 조직경영체에 전념하고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농민은 더 이상 농가로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조직경영의 사원 또는 조합원이며, 그 농가는 '농촌 가구'인 것이다.

또한 기존의 準農家라는 애매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며, 이들은 조직경영체 내지는 기관 및 단체로 분류된다. 종래에 농가와 준농가의 용어를 사용해 온 일본에서도 1950년 이후에는 농가 이외의 농업사업체라는 용어로 변경한 바 있다.

3.2.3. 농업경영체 통계의 보완 영역

위와 같은 농업경영체 통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 현재 농가 통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가경제조사가 별도로 작성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앞으로는 농가를 포함한 農業經營體의 構造 變動과 經營 實態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하나는 組織經營體의 실태에 관한 통계이다. 현재의 조직경영체는 기존의 농가가 발전하는 조직의 형태로서 육성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개인농가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조직경영체가 개인농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통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농업서비스 사업체에 관한 통계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는 아직까지 독립적인 농업경영의 단위로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현재의 위탁영농회사는 독립적인 농업경영체라기 보다는 농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 사업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농업의 전문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러한 영농서비스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더욱이 독립적인 농업경영체로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농가의 유형화와 분류의 방향

위에서 파악되는 농가(가족경영)에 대하여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소위 농업경영체로서의 本質論과 形態論의 시각이다.

먼저, 본질론은 농업경영체로서의 존립(going concern)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특히 종래부터 현재까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가족경영에 대하여 노동력 보유 및 농업종사 상황의 관점에서 유형 구분하여 각각의 경영적인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다.

형태론은 作目 選擇 혹은 部門 組織의 編成 등 농가 내부적인 경영방식과 직결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주로 토지 이용방식으로 표출되어 왔으나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술 또는 자본과의 관계이다. 특히, 노동집약도 및 자본 집약도라는 관점에 의한 유형 구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농가를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 유형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기대되는 농업 구조의 재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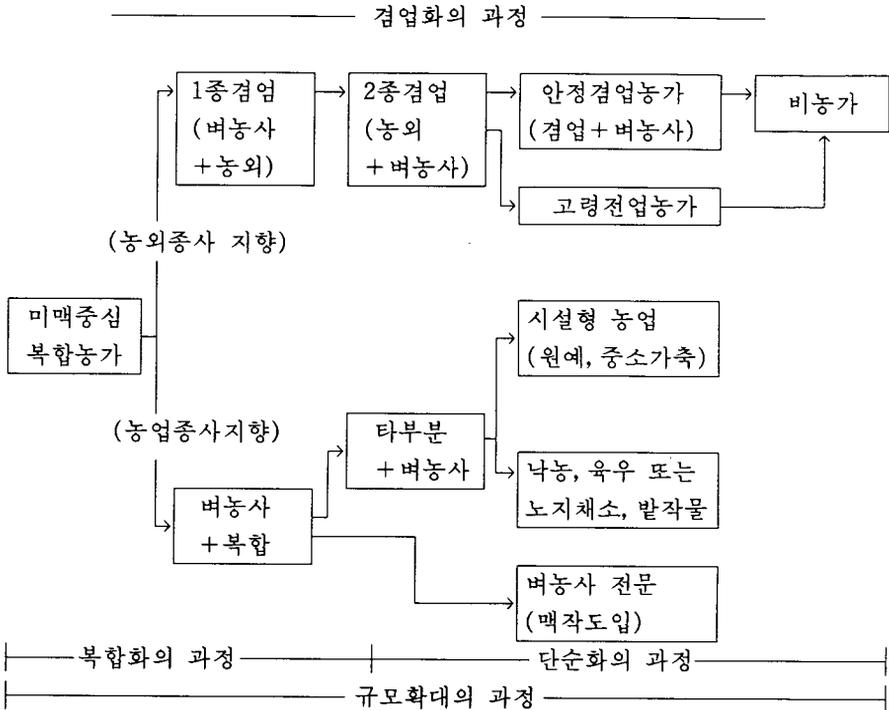
4.1. 농가 및 농업경영의 분화 과정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농가 및 농업 경영이 어떻게 분화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5)이다.

이미 검토하였듯이 전통적인 농가는 ‘소유=경영=노동’이 일치되는 단위로서 농업 이외의 노동력은 거의 무시할 정도였으나 현재 이러한 농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과거 농가의 주된 형태였던 ‘世帶主=所有主=經營主’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가도 점차 핵가족화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점점 농업으로부터 이탈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미 검토한 바와 같다.

그림 4-5 농가 분화과정의 모식화



결국 농가의 非農家化는 가족 노동력의 분화로 표출되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가구원 겸업→경영주 겸업→탈농’이라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력 분화의 어느 단계까지를 농가 혹은 전업농가로 간주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다음으로, 경영의 형태면에서 볼 때 미맥 중심의 전통적인 농가는 벼농사에 전문화하느냐 혹은 다른 작목과 복합화하느냐의 두 가지 방향으로 분화되어 왔다. 이 중에서, 특히 벼농사를 기간 작목으로 하지 않는 ‘타부분+벼농사’의 형태는 다시 單純化의 過程을 거치면서 축산이나 원예 등의 시설형 농업으로 전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전문경영은 대규모 생산·유통의 이익을 실현하며 더욱 전문화를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주된 형태는 아직까지도 복합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토지의 보완적 이용을 추구하는 부문간 복합화이다. 이것은 지력의 보합적·보완적 이용을 추구하는 형태로서 동일 기간중의 혼작 혹은 재배 기간을 달리하는 전후작과 같이 복수의 작목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의 양분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생산물간의 기술적인 보완관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느 한 부문에 의한 중간 생산물을 다른 부문에서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콩과작물과 화분과작물의 전후작 관계, 조사료나 기비의 자급, 가공원료의 자급관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고정자본재의 보합적 이용으로 경영에 고정되어 있는 전업노동력 및 농기구 등 고정자본재의 보합적 이용을 통한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동력과 트랙터를 연중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목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4.2. 능가 분류체계의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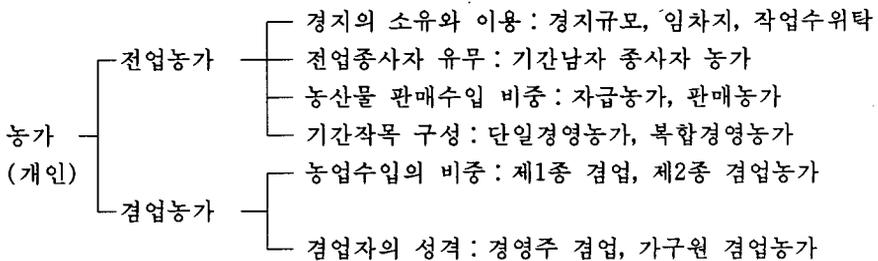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의 능가 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요약한 것이 (그림 4-6)이다.

먼저, 능가는 농업 노동력의 보유 상태에 따라서 專業農家와 兼業農家로 분류한다. 전업과 겸업의 분류 기준은 현재와 같이 연간 농업 종사일수 30일을 그대로 채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업농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農業生産力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耕地와 勞動力構造를 파악한다. 경지는 소유와 이용 구조가 중심이며, 농업 노동력은 전업종사자, 특히 기간남자 종사자의 유무를 파악한다. 이러한 생산 요소에 의하여 나타나는 성과의 지표로는 農産物販賣收入의 구성을 파악한다. 즉, 자급농가와 판매농가를 구분하며, 판매농가에 대해서는 基幹作目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단일경영과 복합경영으로 구분한다.

또한 겸업농가는 겸업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농가소득의 비중과 겸업종사자의 가구 구성을 구분한다. 이것은 현행의 농가 통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제1종 겸업과 제2종 겸업의 구분, 그리고 경영주 겸업과 가구원 겸업 등의 분류 체계와 같다.

그림 4-6 농가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



4.2.1. 경영규모의 분류

농업 경영의 규모를 분류하는 척도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경지 면적이다. 그러나 농업의 생산력 측면에서 경지 면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土地利用型 農業에 한정된다. 따라서 축산이나 시설원에 등과 같은 施設型 農業을 포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 이외의 노동 또는 자본재를 보완적인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定量化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보다는 이들 생산 요소의 성과로 나타나는 農產物 販賣額을 규모 지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표는 상업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농가의 경지규모별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1ha 미만 6개 급간, 2ha까지 2개 급간, 3ha까지 2개 급간, 그리고 3ha 이상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규모 농가의 성격 파악을 위하여 3ha 이상의 급간을 5ha 이상 혹은 그 이상까지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4.2.2.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분류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가 진전되면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農地流動化의 방향이다. 농지 유동화는 소유지의 확대와 차입지의 확대로 구분되며, 최근의 농가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차입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자작농이 분해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농지의 임대차는 규모 확대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진전될 것이다. 한편 임대차는 임차권이라는 법적인 권리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업 수위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 현장에서 農地 賃貸借와 作業 受委託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관계는 屬地主義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농가 통계는 조사 대상을 농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파악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농가를 적절하게 유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즉,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농가, 임차농가, 임대차 혼합농가 등으로 구분하고, 마찬가지로 농작업의 수위탁에 대해서도 위탁농가와 수탁농가를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을 교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2.3. 노동력 보유 형태의 분류

농가 통계에서 농업 노동력을 구분하는 것은 농업 경영의 전업적인 정착과 농의 취업에 의한 단계적인 이탈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현행의 전업농가(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의 시계열을 유지하면서 基幹 從事者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즉,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립적인 농업경영체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가구원

의 수, 특히 기간납자 종사자의 유무를 파악한다. 또한 농업 경영의 승계에 필요한 후계자의 성격도 중요하다.

또한 겸업농가는 겸업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현행의 경영주 겸업과 가구원 겸업 등의 분류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4.3.4. 농업경영 조직의 분류

현행의 농가 통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가 경영조직에 관한 분류이다. 즉, 현재는 작목별 수확면적 및 기간작목을 기준으로 영농형태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렇게 분류된 영농 형태별로 농가의 성격을 파악하는데도 미흡하다.

물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농가를 영농 형태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이 영세농이며 복합경영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小規模 多品目の 농업일수록 그 형태의 구분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세농일수록 작목의 선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류된 영농 형태의 생성 요인을 판단하게 하는 것도 농가 통계의 중요한 과제이다. 개별경영이 자기 완결적으로 생산 활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經營의 立地 條件, 즉 경영 외적요인으로서의 자연적 조건, 시장 조건, 사회적 조건, 제도·정책조건 등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작목이 채택되기 마련이다. 동시에 동일한 입지 조건을 갖는 경영일지라도 經營의 內部 條件, 즉 가족 노동력, 농경지, 농업자본 등 경영 요소의 규모와 결합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서 경영자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작목이 선택되고 또한 작목간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 경영의 기간이 되는 작목과 그 결합 방식인 경영 부문(조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영조직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는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대체로 생산 기술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대분류로서 農業經營, 園藝經營, 畜產經營 등의 세 가지 구분을 이용하고, 그 중에서 농업경영은 다시 單年作 經營과 永年作 經營으로 구분한다. 단년작 경영은 벼농사 중심의 일반경종이며, 주로 전작을 겸한 수도작 복합경영이 대상일 것이다. 영년작 경영은 과수 단일경영과 인삼 등의 특용작물이 해당된다.

그리고 원예경영은 노지채소와 시설채소 및 화훼가 해당되며, 축산경영에는 낙농, 육우, 양돈, 양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보고서의 요약

농가의 정의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파악되는 농가가 농업 정책이나 농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농가의 모습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규정되는 農家의 最低 基準이 우리 농업의 영세성을 전제로 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단적으로 1950년대에 정해진 경지면적의 하한 기준 10a가 그대로 현재의 농가 정의에도 존속되고 있으나, 시설원예나 축산은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지면적을 가지고도 과연 농가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발작물의 경우에는 소위 농가의 하한규모인 10a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전체 재배농가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영세한 규모이다. 이렇게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 다시 세분류하여 영농형태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전통적인 농가의 성격이 현저하게 바뀌어 왔으나, 이를 통제에서 단계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地主로 일컬어지는 ‘토지 보유자’ 계층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농기계가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듯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기는 위탁영농이 성행하여 이미 ‘영농을 행하는 세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농가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農家 定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가 개념 및 용어는 1908년 통감부 당시에 농업 통제를 도입하면서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단위나 농업 생산의 단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家’ 보다는 ‘戶’의 개념이 통용되었으며, 농가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의 농업 통제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準農家도 마찬가지이다.

(2) 현행의 통계적 정의에서 농가는 農業經營 單位로서 파악되며, 여기서는 경종과 축산을 포괄하고 있다. 즉, 농가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며, 이 농가는 다시 개인농가 및 준농가로 분류된다. 또한 準農家란 “개인농가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 단체(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기타)”를 말한다.

(2) 법률적인 농가 정의는 농지개혁법 이후에 농지 소유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종농업(논, 밭, 과수원 경영)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업에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초지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농지법상의 농가’는 아닌 것이다.

(3) 농가 정의에 관한 농민 의견 조사의 결과 농민이 생각하는 농가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의미로 나타났다. 즉, 직접 농사지어야 한다는 자경요건이 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요건으로 19.6%,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농지요건이 18.3%이었다.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는 취업요건과 농업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소득요건은 각각 13.2% 씩으로 동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한다는 판매요건은 4.2%이었다.

(4) 비농가의 처리는 근본적인 농가 통계의 과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농업 생산의 단위'로서의 농가와는 거리가 멀며, 또한 수적으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농가가 농촌 마을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농업경영적인 농가와 진정한 의미의 농업경영적인 농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農村家口'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농가는 경영 단위(생산 경제)인 동시에 가계 단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농업경영 부문만을 떼어낸 것이 '농가=농업경영체'가 되며, 이를 가족경영, 즉 '家族農'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앞으로의 농가 통계는 농업경영체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農家 統計보다는 農業經營體 統計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6) 농가의 통계적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모두 수용하는 체계를 갖추되, 그 분류에서 선별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의 정의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결국 현행 농가 규정의 下限 規模를 상향 조정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하한을 인상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현행 규정을 조정하여 농가를 축소하게 되면 기존의 농가 통계와 일관성을 결여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7) 다만 현행의 농가 정의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지 규모, 시설 면적, 가축 두수, 판매 수입 등의 요건을 단순화하여 耕地의 耕作

과 農產物 販賣收入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농가(농업경영체)란 10a 이상의 경지를 경영하거나 연간 일정액(예를 들면 1993년에는 3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 생산의 단위이다. 이 정의에 따르더라도 소수의 무경지 농가와 농업노동자를 비롯하여 현재 수준의 농가 호수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8) 앞의 정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농업경영체는 기존의 가구 단위로서의 농가와 이들 개인농가 이외의 組織經營體, 그리고 농업경영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세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개인농가를 구성원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사실상 농업경영을 행하는 회사만 해당)는 조직경영체에 속하여야 하며, 이들 조직경영체에 전념하고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농민은 농가로 취급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準農家라는 애매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며, 이들은 조직경영체 내지는 기관 및 단체로 분류된다.

(9) 농업경영체 통제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는 농가를 포함한 농업경영체의 구조 변동과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조직경영체 및 농업서비스 사업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10) 농가 통계는 통계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분류 집계되어야 한다. 먼저, 경지 규모는 농업 경영의 규모를 분류하는 척도로서 중요한 지표이나 토지이용에서 벗어나는 농업(시설원예, 축산)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액 구분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지 규모 분류의 급간을 조정하여 대규모 농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3ha 이상의 급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11) 앞으로 예상되는 농가의 성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경지와 노동력 구조이다. 농지의 임대차 관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농작업의 수위탁 관계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의 전업적인 정착과 농외취업에 의한 단계적인 이탈 과정이 파악되어야 한다.

(12) 상업농화의 진전에 따라서 농업 경영의 형태가 분화되는 과정이 농가 통제의 중요한 역할로 기대된다. 현재는 작목별 수확면적을 기준으로 영농형태를 파악하는 정도이며, 농업경영의 총체적인 파악의 측면에서 미흡하다. 따라서 농가의 영농 유형을 판매액 기준의 기간작목으로 대분류하여 농업경영, 원예경영, 축산경영 등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결론 및 정책 건의

우리 나라의 농업 통제는 그 시발부터 전통적인 세대 단위의 농가를 생산 단위로 파악하여 ‘농업을 행하는 가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렇게 본래 家計의 單位인 世帶(농가)를 생산의 단위(農業經營體)로 간주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경영과 생활이 미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원의 협업 체제에 의하여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일찍이 ‘家’라는 단위의 농업경영체가 전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家族農의 전제는 농가의 성격 변화에서 살펴 보았듯이 노동력의 농외 유출이나 상업농화의 진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였다.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家族勞作的인 自作農은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농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게 되고, 이를 수탁받는 주체로서 기존의 농가로 정의되어 온 가족농 이외의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나타났다. 이들은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된 생산 단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를 크게 나누면 스스로가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그리고 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내지는 조직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경영체가 농업 생산에 폭 넓게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총량적인 파악은 소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제까지의 통계에서 농가를 단위로 한 조사와 농업 생산에 관계되는 농가 이외의 사업체나 조직에 관한 조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에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개별 농가의 농업 활동이 외부의 사업체 또는 조직과 어떻게 연관되면서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파악이 소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를 농가 통계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농지제도를 비롯한 농업 정책에서도 농가(가족농)만을 농업 생산의 단위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는 그 성격조차 모호한 '準農家'로 표현하여 개별 농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가 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화하고 있는 농업 생산의 단위를 수용할 수 있는 정의 및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알맞게 조사 방법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를 개념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농가의 본질이 경영 단위(생산 경제)인 동시에 가계 단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농업 경영 부문만을 떼어낸 것이 '농가=농업경영체'가 되며, 이를 가족경영, 즉 '家族農'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농이 아닌 농업경영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하나는 개인농가의 협업경영이고 다른 하나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하지 않는 조직체로서 '企業農'의 범주에 속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앞으로의 농가 통계는 농업경영체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農家 統計보다는 農業經營體 統計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나아가서 개념 정립의 기본 방향은 통계적으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모두 수용하는 체계를 갖추

되, 그 분류에서 선별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가의 정의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결국 현행 농가 규정의 下限 規模를 상향 조정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하한을 인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현행 규정을 조정하여 농가를 축소하게 되면 기존의 농가 통계와 일관성을 결여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농가 정의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의 농가 정의와 조사 대상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분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록 1. 외국의 농가 정의와 관련 통계

1.1. 미국의 가족농장

1.1.1. 가족농장의 개념

- 1944년의 농무성 견해: “가족경영의 경영자는 농장의 경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도 농업경영에 협력하며, 밖으로부터 적당한 사람 수 이상은 고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생활을 창조하여 농장을 유지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
- 이 정의에서는 가족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경영이나 겸업농가는 제외되며, 또한 대규모 농장도 제외되었다. 그 결과 전농장의 56%만이 가족농장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 1944년의 정의는 1950년대에 들어 크게 수정되었다. 그 배경으로 가족농장은 현저하게 감소한데 반하여, 당초 제외되었던 겸업농가 및 재촌지주의 농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농무성은 가능한 한 많은 농장을 가족경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을 도입하고 있더라도 1.5인 이상의 가족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장”으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당시 농장의 95%가 가족 경영으로 규정되고, 대규모 농장이나 법인 조직농장도 가족경영으로 칭하게 되었다(Freeman 1963).
- 1977년에 의회는 정부의 지나치게 광의인 가족경영의 정의에 대하여 가족경영과 소농을 구별하여 각각 보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로서는 농업에 거액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가족경영의 정의를 폭 넓게 적용하였다.

- 현재 가족농장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근간을 이루는 독립자영의 농민층을 의미한다. 가족농장의 경영주는 농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일부분의 차지는 인정되지만 완전 차지농은 가족농장으로 인정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농장은 토지 소유자·경영자·임노동자의 3가지 성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영인 셈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력에 의해 보충되어도 좋으나 고용노동량은 총가족노동력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1.1.2. 가족농장의 동향

- 농장 총수 : 1959~74까지 일관되게 감소, 그러나 74~78년간에는 165천 농장이 증가, 다시 7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다.
- 대규모 농장의 증가 : 전농장의 약 5%에 불과한 대규모 농장이 총판매액의 50% 이상을 생산(1985년 농업센서스). 농지면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대농장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1990년 현재 약 15%의 농장이 52%의 농지를 점유한다.
- 가족농장의 비율 : 1970년대 중반까지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후 계속 감소하여 1988년 현재 62% 수준이다.
- 미국 농장의 3대 분류(미국 농무성 특별조사보고, 1980)
 - 제1그룹 : 농외수입 의존율이 극히 높은 「재촌지주농장」 또는 「취미농장」, 총농장수의 약 44%, 총판매액의 2% 점유
 - 제2그룹 : 판매액 500~4만달러의 소농장,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고, 보조적인 농외소득이 필요함. 총농장 수의 약 34%, 총 판매액의 17% 점유.
 - 제3그룹 : 본격적인 농장(primary farms)으로서 총농장 수의 22%, 총판매액의 81.3%를 점유. 주로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국민식량의 대부분을 생산. 그 중 판매액 4~10만달러의 농장(총농장 수의 15%, 총판매액의 25%), 판매액 10~20만

달러의 농장(총농장 수의 5%, 총판매액의 17%), 판매액 20만달러 이상의 농장(총농장 수의 2%, 총판매액의 39%).

부표 1 미국의 농장 수 및 농장의 평균규모, 1977~90

년 도	농 장 수	농 지 면 적	
		천acres(천ha)	acres(ha)
1977	2,455,830	1,047,785(424,039)	427(172.8)
1978	2,436,250	1,044,790(422,827)	429(173.6)
1979	2,437,300	1,042,015(421,704)	428(173.2)
1980	2,439,510	1,038,885(420,437)	426(172.4)
1981	2,439,920	1,034,190(418,537)	424(171.6)
1982	2,406,550	1,027,795(415,949)	427(172.8)
1983	2,378,620	1,023,425(414,180)	430(174.0)
1984	2,333,810	1,017,803(411,905)	436(176.4)
1985	2,292,530	1,012,073(409,586)	441(178.5)
1986	2,249,820	1,005,333(406,858)	447(180.9)
1987	2,212,960	998,923(404,264)	451(182.5)
1988	2,197,140	994,543(402,492)	453(183.3)
1989	2,170,520	991,153(401,120)	457(184.9)
1990	2,143,150	987,721(399,731)	461(186.6)

주: 농장수는 6월 1일 기준으로 연간 1,000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매출하는 경영체.

부표 2 미국의 경작권자별 농장 수 비율, 1959~87

년 도	총 농 장 수	완전소유자			
		완전소유자	부분소유자	관 리 자	완전차지인
		%	%	%	%
1959	3,710,503	57.1	21.9	0.6	20.5
1964	3,157,857	57.6	24.8	0.6	17.1
1969	2,730,250	62.5	24.6	—	12.9
1974	2,314,013	61.5	27.2	—	11.3
1978	2,257,775	57.5	30.2	—	12.3
1982	2,240,976	59.2	29.3	—	11.6
1987	2,087,759	59.3	29.2	—	11.5

자료: U. S. D. A., Agricultural statistics, 1990.

부표 3 미국의 매출액 규모별 농장비율 및 농지면적, 1989~90

총 매출액 규모별 구분	비율(%)				평균 규모(ha)	
	농장수		농지면적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000~ 2,499 \$	22.7	22.2	3.1	3.0	25.1	25.1
2,500~ 4,999	13.8	13.7	3.1	3.1	41.7	42.1
5,000~ 9,999	11.8	11.7	4.5	4.1	70.4	65.6
10,000~19,999	10.7	11.1	6.0	6.3	103.6	106.0
20,000~39,999	12.2	12.1	11.7	10.8	177.3	166.3
40,000~99,999	14.5	14.4	23.1	23.2	294.2	300.7
100,000~24,999	9.6	10.0	24.5	26.0	471.5	484.8
250,000 \$ 이상	4.7	4.8	24.0	23.5	943.8	913.0

자료: the Census of Agriculture.

부표 4 미국의 가족농장 비율

년도	총농장 수	가족농장 수	가족농장 비율
1977	2,455,830	2,172 천호	88.4%
1978	2,436,250	2,051	84.2
1979	2,437,300	1,667	68.4
1980	2,439,510	1,631	66.9
1981	2,439,920	1,598	65.5
1982	2,406,550	1,617	67.2
1983	2,378,620	1,558	65.5
1984	2,333,810	-	-
1985	2,292,530	1,562	68.1
1986	2,249,820	1,448	64.4
1987	2,212,960	1,428	64.5
1988	2,197,140	1,351	61.5

자료: U. S. D. A., Agricultural statistics, 1990.

1.2. 영국의 가족경영

1.2.1. 가족경영의 개념

- 19세기초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대규모 자본주의적 농장이 지배적이었으나,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소규모 가족노작농장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가족농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인의 비율이 높고, 고용인의 다수는 동거하인(living in servants)이나 농장가계의 구성원으로서 보통 작은 규모의 가족농장에서도 보통 2~3명의 하인을 고용하였다.
- 1870년대 말엽 옥수수에 의한 농업 호황으로 인해 가족과 가족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8세기 후반 이래 농업의 3층구조를 형성했던 3대 그룹 중에서 지주와 노동자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Winter(1986)는 농촌인구의 3대 그룹이 ‘새로운 전문 가족 생산자(new specialised household producers)’ 형태로 분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① 곡물 경영 : 모든 가족 구성원이 육체노동에 동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여성들은 양계나 낙농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
 - ② 축산·원예경영 : 이전에 자본가적 농민(중간규모 계층)들은 경종으로부터 가축 생산으로 전환(소규모 가족농민과 결합).
- 20세기에 들어서 고용노동의 사용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세기 중엽 인구총조사 기록에 의하면 거의 농민 1인당 또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가족 구성원 1인당 3명의 고용노동이 있었다고 하나 1931년의 비율은 약 2.5 : 1이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자영농(owner occupation)의 성장으로, 1908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약 1/8의 농지가 자영되었으나, 1927년까지 그 규모는 1/3을 상회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2/3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 현재 일상용어나 학술용어에서도 family farm 보다는 small farm이 널리 사용되며, 농장 계층은 영세농장, 소규모농장, 중규모농장, 대규모 농장으로 구분된다.
- 가족농장이란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장이나 중규모 농장을 칭하지만, 그보다는 소규모 내지 중규모 농장을 지칭하는 가족노작경영(family worked farm)을 사용하고 있다.
 - 소규모농장 : 일반적으로 겨우 가족노동력으로 재생산 가능한 농장
 - 중규모농장 : 가족노력을 완전연소시키고 재생산할 수 있는 농장
 - 가족노작농장 : 둘 이상 노동단위를 갖춘 경영
- 가족경영농장(farm as a family business)의 개념에서 통상적인 노동 투입의 상당 부분이 가족구성원에 의해 공급된다는 것은 필요조건이 아니며, 가족노작농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1.2.2. 가족농장의 동향

- 1982년 현재 VAT기록에 등록되어 있는 131.8만 농가 가운데 14%인 17.9만 농가만이 표준공업 분류기준의 농림수산업에 포함된다. Harrison(1975)은 잉글랜드 농가의 97.5%가 경영주가 혈족 또는 결혼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가족경영으로 분류하고 있다.
1975년 EC 농장구조조사(Farm Structure Survey)에 의하면 영국 농장의 94%는 단일소유권 또는 개별기업으로서 경영된다고 한다.
- 1982년 총농장 수(149.8만)의 34.5%가 영세농장, 소규모농장이 32.7%, 중규모농장이 21.3%, 대규모농장이 11.4%로 조사되었다. 영세농장, 소규모농장, 중규모농장의 대부분은 가족노동력에에만 의존하며, 대규모농장은 다수의 상시고용에 의존하고 있다.

- 1980년 이후 영세농장은 수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생산액에 대한 기여율은 저하하고 있으며, 특히 낙농 부문에서는 소규모 농장이 감소하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규모농장은 양극 분화의 분기 계층이며, 중규모 농장의 규모 확대는 차지 중심이다.

1.3. 서독의 가족농장

1.3.1. 가족농장의 개념과 변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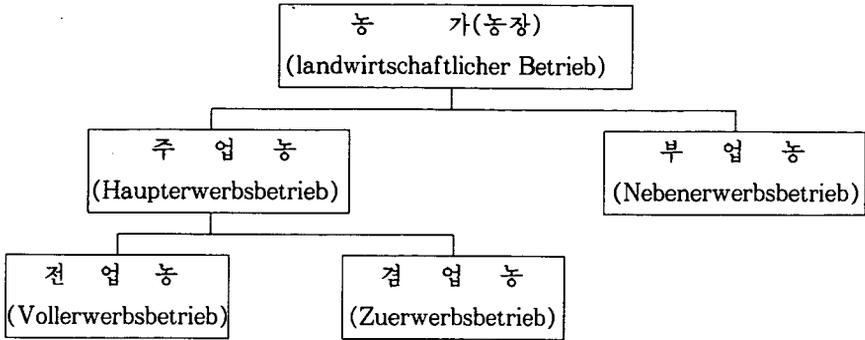
- 제1단계(18C. 말) : 정신적 변혁기
 - 국민적 관심의 고조
 - 각종 협회의 발족
 - 농학의 기틀 마련
- 제2단계(19C. 초) : 사회적·법적 제도의 개혁기
 - 농민의 신분적 해방(농노신분의 마감)
 - 농민의 토지소유 인정
 - 농지 이용의 집약화
- 제3단계(19C. 중반) : 과학과 기술의 보급 및 확산기
 - 영농기술의 혁신과 생산 증가
-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때까지의 봉건지주 및 영주제도가 붕괴되고, 이와 함께 농민 해방, 농민 정착(이주), 농지 상속 등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소규모 가족농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독일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형성하였다. 특히, 농민 정착정책과 농지의 균등상속 관습은 소규모 가족농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 농지의 균등상속에 의한 농가의 소규모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1933년에 들어선 나치정권은 상속관습에서 비롯되고 있는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규모 유지

를 위해서 농지비 분리법을 제정·공포했으며,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농지 상속에 그보다 많은 융통성이 부여되기는 했으나 비분리상속의 기본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수년간은 상당한 식량 불황과 함께 소농구조는 더욱 심화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 독일의 중요한 농업지역이었던 동부지역이 동독으로 분리
 - 1946/47년의 흉작으로 인한 생산량 부족
 - 동독으로 부터의 피난 및 이주자의 유입
- 따라서 1935~1938년의 경작지 100ha당 부양인구가 238명(독일 전체)이었으나, 분단 이후인 1948/49년에는 352명(서독)으로 증가, 1937년에는 50ha 이상 경작농가의 경작지 전체 경작면적의 24.4%에 달했으나, 1948/49년에는 그 비중이 11.1%로 크게 줄어 들었던 사실로 입증된다.

1.3.2. 가족농장의 동향

- 독일의 농장에 대한 유형별 분류는 필요에 따라서 그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영업성격(Erwerbscharakter)'을 기준할 경우 일반적인 정부통계 농업보고서(Grün Report)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주업농 : 경영주 부부가 전체 근로시간의 1/2 이상을 농사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가
 - 전업농 : 경영주 부부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10% 미만
 - 겸업농 : 경영주 부부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10~50%
 - 부업농 : 농가의 농업노동력이 0.5인 미만이거나, 경영주 부부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가



부표 5 서독의 농가 유형별 호수

단위: 1,000호, (%)

년 도	주 업 농			부 업 농	계	1ha 미만 농가
	전업농	겸업농	소 계			
1975	409.1(45.2)	138.7(15.3)	547.8(60.5)	356.9(39.5)	904.7(100.0)	—
1980	397.3(49.8)	86.5(10.9)	483.7(60.7)	313.7(39.3)	797.4(100.0)	—
1985	356.9(49.5)	70.3(9.8)	427.2(59.3)	293.6(40.7)	720.8(100.0)	37.5
1990	308.3(49.0)	55.1(8.7)	363.4(57.7)	266.3(42.3)	629.7(100.0)	37.5

부표 6 서독의 농가 유형별 경지면적 점유

단위: 1,000ha, (%)

년 도	주 업 농			부 업 농	계	1ha 미만 농가
	전업농	겸업농	소 계			
1975	9,179.3 (73.7)	1,491.2 (12.0)	10,670.5 (85.7)	1,791.6 (14.3)	12,462.1 (100.0)	18.1
1990	9,220.3 (78.3)	1,003.0 (8.5)	10,223.4 (86.8)	1,550.0 (13.2)	11,773.4 (100.0)	

부표 7 서독의 농가 유형별 호당 평균 경지면적

단위: ha/호

년 도	주 업 농			부 업 농	계	1ha 미만 농가
	전 업 농	겸 업 농	소 계			
1975	22.4	10.8	19.5	5.0	13.8	
1980	23.6	14.0	21.9	5.1	12.3	
1985	26.1	15.4	24.3	5.3	16.6	0.5
1990	29.9	18.2	28.1	5.8	18.7	0.5

부표 8 서독의 경지 규모별 농가 호수

단위: 1,000호

규 모 별		1~2ha	2~5ha	5~10ha	10~15ha	15~20ha	20~25ha
농 가 호 수	1975	123.1	188.6	179.0	120.5	91.2	63.8
	1980	102.9	154.9	149.1	102.3	79.0	59.5
	1985	89.9	134.4	130.0	89.4	69.9	53.5
	1990	78.6	111.5	106.1	72.5	57.2	44.7
규 모 별		25~30ha	30~50ha	50~100ha	100ha 이상	소계	1ha미만
농 가 호 수	1975	42.8	69.5	22.3	3.9	904.7	71.4
	1980	43.1	75.3	26.9	4.4	797.4	39.1
	1985	40.2	76.3	32.1	5.2	720.8	37.5
	1990	35.4	76.0	40.6	7.1	629.7	37.5

자료: 서독 농업백서.

1.4. 일본의 농가

1.4.1. 농가의 개념과 정의

- ‘농가’는 통계적이나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토지 소유자’ 혹은 ‘경작자’로 칭하고 있다.
- 또한 농가 통계에서 ‘농가’는 ‘농업사업체’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를 말하며; 세대 이외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농업사업체를 구성한다. 이 농업사업체라는 명칭은 1950년 센서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장 혹은 농장의 의미한다.

- 농가 이외의 사업체에는 협업경영체,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타 회사, 농협, 기타 농업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사업체 등이 포함되며, 1950년 이전에는 '준농가'로 호칭되었다.
- 이들 농가 이외의 농업사업체는 농업법인제도에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다. 즉, 1962년 농업생산법인제도 도입함으로써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의 권리명의를 가질 수 있는 법인은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며, 각 법인은 다음과 같이 설립 등기된다.
 - 농사조합법인 : 농협법
 - 유한회사 : 유한회사법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 상법
- 농업사업체(농가 및 농가 이외의 사업체)의 정의 : 경영경지 면적이 10a 이상이거나 또는 경지면적이 이 규정에 달하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조사일 : 1990. 2. 1)의 농산물 판매액이 15만 엔 이상인 농업 사업체.
 - 경지면적 하한 기준 : 1985년까지는 경지 면적의 하한 기준으로 동 일본에서는 10a 이상, 서일본에서는 5a 이상을 규정.
 - 예외규정농가의 기준 : 경지면적 하한에 달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 하한 기준(1950년 센서스: 1만 엔, 1955/60년 센서스: 2만엔, 1965년 센서스: 3만엔, 1970년 센서스: 5만엔, 1975년 센서스: 7만엔, 1980년 센서스: 10만엔, 1990년 센서스: 15만엔)
 - 농작업수탁의 '자영농업'인정 : 종래에는 농작업수탁을 겸업(자영업)으로 취급하였으나, 1990년도 센서스부터 '自家農業'에 농작업수탁을 포함한 '自營農業'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 농업서비스사업체의 정의 : 농업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농

업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농협 등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도 포함) 농작업을 행하는 농업생산조직, 농협, 지방공공단체, 회사, 개인업자 등의 사업소(농업사업체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묘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포함) 중에서 농업사업체인 경우를 제외한 사업소를 말한다. 다만 항공방제를 행하는 회사는 대상으로 한다.

부표 9 일본의 농가 동향

년 도	총농가수	자급적 농 가 ¹⁾	판 매 농 가 ²⁾				
			계	전업농가	겸 업 농 가		
					계	제1종겸업	제2종겸업
1960	6,056	—	—	2,078	3,978	2,036	1,942
1965	5,665	—	—	1,219	4,446	2,081	2,365
1970	5,342	—	—	831	4,511	1,802	2,709
1975	4,953	—	—	616	4,337	1,295	3,078
1980	4,661	—	—	623	4,038	1,002	3,036
1985	4,376	—	—	626	3,750	775	2,975
1985	4,229	914	3,315	498	2,817	758	2,058
1990	3,835	864	2,971	473	2,497	521	1,977
1992	3,742	854	2,888	451	2,437	446	1,991

자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農林水産統計.

1.4.2. 농가의 구분

○ 농가의 구분

- 판매농가: 경지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총판매액이 50만엔 이상인 농가
- 자급적 농가: 경지면적이 30a 미만이면서 농산물 총판매액이 50만엔 미만인 농가

○ 전겸업 구분

- 전업농가 : 세대원중에 겸업종사자(조사일전 1년간에 30일 이상 고용 겸업에 종사한 자 또는 조사기일전 1년간의 판매금액이 10만원 이상(1960년 센서스: 1만원, 1965년 센서스: 2만원, 1970년 센서스: 3만원, 1975년 센서스: 5만원, 1980년 센서스: 7만원)인 자영겸업에 종사한 자)가 1인도 없는 농가. 단 1990년 센서스 이전에는 농작 업수탁을 자영겸업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농업으로 간주한다.
 - 겸업농가 : 세대원중에 겸업종사자가 1인 이상 있는 농가
 - 제1종 겸업농가 : 농업을 주로 하는 겸업농가
 - 제2종 겸업농가 : 농업을 종으로 하는 겸업농가
 - 고용겸업 : 조사일전 1년간에 30일 이상 타직업에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 자영겸업 : 수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농업 이외의 사업으로 각 자영업이 1종류로서 조사일전 1년간의 총매출액이 10만원 이상 올린 경우
- 세대주 종사 구분
- 세대주 농업전종농가 : 조사일전 1년간에 자가농업에 150일 이상 종사한 세대주가 있는 농가
 - 세대주 겸업농가 : 겸업에 종사한 세대주가 있는 농가
 - 기타 농가 : 세대주가 농업만에 종사하고 종사일수가 150일 미만의 농가 및 세대주가 무업인 농가
- 경영 구분
- 단일경영 : 도작, 맥류작, 잡곡·두·서류, 공예작물, 시설원예, 야채류, 고수류, 기타 작물,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양잠 중에서 한 부분의 판매액이 총판매액의 80%(1976년까지는 60%) 이상을 점유하는 부문이 있는 경영
 - 복합경영 : 한 부분의 판매금액이 총판매액의 80% 미만인 경우. 그 중에서 판매액 1위 부분의 금액이 80~60%인 경우를

준단일 복합경영으로 분류한다.

○ 소득·남자 전업종사자의 종사 구분

- 자립경영농가 : 농가와 생활 환경이 유사한 근로자세대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여 세대인 1인당으로 근로수입과 균형하는 수준 이상의 농업소득을 실현하는 농가(1991년도 자립경영농가의 하한소득은 522만엔으로 설정).
- 중핵농가 : 기간남자 농업전종자(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로 자 가농업에 150일 이상 종사한 자)가 있는 농가

부표 10 일본의 농가 이외의 농업사업체 구분, 1990

종 류	내 용	사업체수
협업경영체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2호 이상의 세대가 농업경영에 관하여 재배, 사육, 판매, 수지결산 등의 일체의 과정을 공동으로 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체	3,581
회 사	주식, 합자, 합명, 유한의 어떤 형태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단, 명목상의 회사라도 실제로 1호의 세대가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농가로 취급한다.	3,090
농 협 등 농 업 단 체	종합농협, 전문농협, 농사실행조합 등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채종포나 번식센터를 설치하고 자돈을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1,287
국가, 지방 공 공 단 체	농사시험장, 지방공공단체의 육성목장 등 국가, 도, 도부현, 시정촌이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1,145
학 교	학교농장 등 학교(관공립에 관계없이)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705
기 타	사찰이나 4H클럽 등이 식량자급이나 시험포 등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1,812

자료: 농림수산성, 1990년 세계농림업센서스결과.

부록 2. 농가 정의에 관한 여론조사표

1. 통신원번호 :
2. 선생님의 금년 연세를 적어 주십시오. ()세
3. 현재 함께 사시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명
4. 가족의 세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표 하십시오.
 - () ① 1세대로 본인 부부만의 단독 가구
 - () ② 2세대로 본인 부부와 미혼 자녀
 - () ③ 2세대로 본인 부부와 기혼 자녀
 - () ④ 2세대의 기타
 - () ⑤ 3세대의 직계가족(본인, 아들, 손자 등)
 - () ⑥ 3세대의 복합가족(본인, 사위, 외손자 등)
 - () ⑦ 3세대의 기타
 - () ⑧ 4세대의 직계가족(조부모, 본인, 아들, 손자 등)
 - () ⑨ 4세대의 기타
5. 가족 중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 남자 ()명
 - └ 여자 ()명
6. 경영주는 농업 이외의 다른 일에도 종사하십니까?
 - () ① 겸업에도 종사 () ② 농사에만 전념
7. 경영주 이외의 가족 중에서 농외취업자는 몇명입니까?
 - 남여 합하여 ()명
8. 일년 농사를 위하여 고용인력은 전부 몇명이나 쓰시는 편입니까?
 - 연인원으로 ()명

15. 경작하고 계신 밭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밭 경영면적 합계 ()평

┌ 그 중에서 소유 면적은 ()평

└ 남에게서 빌린 면적은 ()평

16. 지난 10년 동안에 소유농지 면적에는 변동이 있습니까?

() ① 변동이 없다. () ② 팔고 줄였다.

() ③ 사서 늘였다.

17. 선생님은 선대로부터 계속 농사를 짓는 농가였습니까?

() ① 선친의 집, 농토 상속 () ② 분가하여 농가 창설

() ③ 비농업에서 이주

18. 선대(조부)로부터 분가 세대 수는 몇이나 됩니까? ()세대

그 중에서 농토를 물려 받은 세대(형제자매 수)는 ()세대

19. 선생님은 농업에 종사하시던 선대의 세대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장남 () ② 차남 이하

() ③ 손자 () ④ 기타

20. 앞으로 농토를 물려줄 후계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장남 () ② 차남 이하

() ③ 손자 () ④ 기타

21. 다음 문항들은 농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농가는 반드시 농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반드시 거주하여야 한다.

() ② 통작거리라면 무방하다

() ③ 거주 여부에 상관없다.

22.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농사 수입은 별로 없이 농외취업에 전념하는 가구도 농가라고 보십니까?

() ① 농가이다. () ② 농가가 아니다.

23.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기 경영은 없이 남의 농작업만을 해주는

경우도 농가라고 보십니까?

() ① 농가이다. () ② 농가가 아니다.

24.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농작업을 전부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농가라고 보십니까?

() ① 농가이다. () ② 농가가 아니다.

25.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이들을 법인의 조합원(혹은 회사원)이 됩니다. 이들도 농가라고 보십니까?

() ① 농가이다. () ② 농가가 아니다.

26. 현행 규정에는 경지를 300평 이상 경작하면 농가에 해당됩니다. 이 면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늘려야 한다. () ② 그대로도 좋다

() ③ 줄여야 한다.

27.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안정정인 농업경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가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농업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① 100만원 이상 () ② 200만원 이상

() ③ 300만원 이상 () ④ 400만원 이상

() ⑤ 500만원 이상

28.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농가는 다음 어느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만 골라서 ○ 표 하십시오.

() ① 세대를 이루어 농촌에서 살아야 한다(거주 요건).

() ②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취업 요건).

() ③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농지 요건).

() ④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자경 요건).

() ⑤ 농산물을 판매해야 한다(상업농 요건)

() ⑥ 농업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소득 요건)

29. 선생님께서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해야 한다.
- () ② 영농 목적에 한하여 허용해도 좋다.
- () ③ 농민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하여야 한다.

30. 다음은 선생님이 사시는 마을(자연부락 동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에는 비농가를 포함하여 전부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 ┌ 전체 가구(세대)의 수 ()호
- └ 그중 농가(세대)의 수 ()호

31. 이러한 농가는 각각 다음의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입니까? 경종농가, 시설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 주된 작목에 해당하는 농가 수를 중복되지 않도록 적어 주십시오.

- ┌ 경지를 300평 이상 경작하는 가구 ()호
- ┌ 시설작물을 1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호
- ┌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호
- ┌ 대가축1, 중가축 3, 가금 40수 이상 사육하는 가구 ()호
- └ 기타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인 가구 ()호

32. 앞에서 파악한 농가 중에서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를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업농가는 농사에만 전업적으로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하며, 겸업농가는 농외취업에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합니다.

- ┌ 전업농가 수 ()호
- └ 겸업농가 수 ()호

33. 마을의 농가를 가족 구성별로 보면 몇 세대씩이나 되는지 다음 항목별로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앞의 4번 문항에 대한 마을 전체의 상황입니다.

- ┌ 1세대의 단독 가구 ()호
- ┌ 2세대 부부와 미혼 자녀 ()호
- ┌ 2세대 부부와 기혼 자녀 ()호
- └ 2세대의 기타 ()호

- 3세대의 직계가족 ()호
- 3세대의 복합가족 ()호
- 3세대의 기타 ()호
- 4세대의 직계가족 ()호
- 4세대의 기타 ()호

34. 마을 농가의 경영주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 20대의 경영주 ()호
- 30대의 경영주 ()호
- 40대의 경영주 ()호
- 50대의 경영주 ()호
- 60대의 경영주 ()호

35. 마을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40세 미만의 청장년 농민은 전부 합하여 몇명이나 됩니까? ()명

36. 마을 농가의 농업소득에 관한 분포를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앞의 4번 문항에 대한 마을 전체의 상황입니다.

- 농업소득만을 가진 가구 ()호
-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가구 ()호
- 농업이 부업인 가구 ()호
- 농업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 ()호

37. 올해 마을에서 거래되는 농지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 논 값은 평당 ()원
- 밭 값은 평당 ()원

38. 올해 마을의 논 임차료는 얼마나 됩니까?

300평 단위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원

39. 논농사를 전부 맡아서 해주는 완전수탁의 작업료는 얼마나 됩니까?
완전수탁이란 육묘에서 수확까지의 전체 작업을 말합니다.

300평당 ()원

40. 요즈음 마을에서 남자의 하루 노임은 얼마나 됩니까?

식대를 포함하여 일당 ()원

41. 마을에서 벼농사의 수확량은 쌀로 환산하여 300평당 얼마나 됩니까?

300평당 정곡 80kg으로 ()가마

42. 평소에 농가와 관련하여 느끼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인용 및 참고문헌

- 김동희, 「한국의 소농 문제: 현실과 문제」, 최호진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974.
- 김병태, 한국농업경제론, 비봉출판사, 1982.
- 김성호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김성호외,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제도 정립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김성호외, 촌락 및 농가실태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12.
- 김정호·김홍배,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12.
- 김정호외,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12.
- 김준보, 「기업농과 협업농의 생산성 평가-농업구조개선에 불입」, 농업경제연구, 1962. 12.
- 주종환,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모색」, 농업경제연구, 24, 1983. 12.
- 최양부외,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 통제청, 한국통제발달사(I, II), 1992.
- 加用信文 外, 農林統計の見方・使い方, 光の家協會, 1980.
- 磯邊秀俊 編, 家族農業經營の變貌過程, 東京大學出版會, 1962.
- 磯邊秀俊 編, 日本の農家, 農林統計協會, 1979.
- 磯邊秀俊 外, 日本農業の構造分析, 農林統計協會, 1982.
- 稻本志良, 地域農業・農業經營と農業法人, 京都府農業會議, 1992. 3.
- 吉田博, 農業生産共同組織論, 農林統計協會, 1980.

農政調査委員会, 現代の農家, (日本の農業, 第165集), 1988.

農林統計協会, 農林水産統計用語事典, 1988.

Strange, Marty, Family Farming, Univ. of Nebraska Press, 1988.

Boehlje, M. D. et al, Farm Management, John Willy & Sons, 1984

Gasson, R., The Farm as a Family Business ; A Review, 1988.

연구보고 278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적은날 1993. 12 펴낸날 1993.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 5-10호 (1979. 5. 25)

적은곳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 737-210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